

2021  
운영상황 보고서

도민  
권익보호  
신뢰받는  
강원도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The Ombudsman of Gangwon Province

## 발간사

## 열린 마음과 경청하는 자세로...



2012년,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가 닷을 올렸습니다. 이 같은 성격의 위원회로는 전국 광역 자치 단체 중 최초였습니다. 출범 이후 도내의 제반 사회갈등을 좀 더 폭넓게 점검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담아 2015년 지금의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보면, 우리 위원회가 도민의 고충민원 해소와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해 온 지도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2년째 이어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우리 위원회가 겪은 어려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간의 피로감과 불안감이 곳곳에 스며들고 누적됨에 따라 도민들 또한 그 어느 때 보다 고조된 긴장과 갈등 상황 속에서 살아야 했던 한 해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 위원회는 2021년 32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했습니다. 이중 복합·고충민원 등은 사실조사와 현장 확인 같은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에 매월 개최되는 정례회에 상정하여 의결했습니다.

또한 현장중심의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이동신문고를 운영했습니다. 말 그대로 도민 여러분의 고충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해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역형 이동신문고' 합동상담을 통해 도내 구석구석의 고충민원을 찾아 적극 해소하고자 했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 도 운영했습니다. 자치분권화 시대에 상응하는 도민과의 점점 확보를 토대로 도민 권익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강원도 주민자치회와의 업무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예년처럼 2021년 한 해 동안의 위원회 주요 운영 내역과 성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이번에도 펴냅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위원회 창립 10주년이 주는 무게감을 새삼 체감하면서 되묻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의 활동과 노력이 도민들의 고충민원 해소와 권익신장에 실제로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또 도민 상호간의 갈등이나 도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갈등 해결에는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자문해 봅니다.

앞으로도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부단히 성찰하면서 열린 마음과 경청하는 자세로 위원회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

김원동

# CONTENTS

1

---

## 제1장. 위원회 개관

I. 도입배경	8
II. 주요연혁	9

2

---

## 제2장. 구성 및 운영

I. 위원회 구성	12
1) 위원회 조직 현황	12
2) 위원의 위촉과 구성	13
3)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현황	14
II.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15
1) 관할	15
2) 위원회의 주요 기능	15
3) 위원회의 주요 권한	17
III. 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	18
1) 고충민원의 정의	18
2) 민원의 신청과 조사	19
3) 위원회 심의·의결 및 통지	21
4) 재심의 및 사후관리	22
5) 고충민원 처리절차	24
〈참고〉 민원 신청방법	25

3

---

## 제3장. 위원회 운영성과

I. 고충민원 처리현황	28
1) 강원도 고충민원 처리현황(총괄)	28
(1) 강원도 고충민원 처리현황( '12년 9월~ '21년)	28
(2) 위원회 고충민원 처리현황( '12년 9월~ '21년)	30

2) 2021년 강원도 고충민원 처리현황	32
3) 2021년 위원회 고충민원 처리현황	35
〈참고〉 2021년 위원회 고충민원 목록	38
II. 2021년 위원회 활동 모습	40
1) 민원 현장조사	40
2) 정례회 개최	43
3) 이동신문고 운영	45
4)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51
5) 위원 변동사항	52
6) 사회갈등조정위원회 홍보 활동	55
III. 위원회 운영 성과 (2012~2021년)	62
1) 옴부즈만 운영 내실화 및 조정 기능 강화	62
2) 국내 지자체 대표 권익보호 기구로서 국제적 위상 제고	63
3) 도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이동신문고” 운영	64
4) 도민 권익 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 확대	65
〈참고 1〉 연도별 위원회 주요 활동 (2012~2021)	66
〈참고 2〉 연간 운영상황 보고서 발간 (2013~2020)	84

# 4

## 제4장. 2021년 주요 고충민원 처리사례

I. 강원도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한 민원	89
II. 의료원 직장상사의 부적절한 언행 조치 미흡	95
III. 교차로 구간 도로 연결허가에 대한 고충	100

# 5

## 제5장. 참고자료

I. 조례	106
II. 시행규칙(별지, 별표 포함)	111
III.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40
IV.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0

제1장

# 위원회 개관





## I. 도입배경

- ┌ 강원도는 산, 바다, 계곡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도권에 맑은 식수를 공급하는 청정지역이다. 또한 남북 분단의 아픔과 평화의 희망을 동시에 간직하고 있는 접경지역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 ┌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호, 군사시설 보호 등 각종 규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강원도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 ┌ 그러나 규제가 완화되고 강원도 내 도로·건설·관광·체육시설 등의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강원도의 자원 및 환경에 대한 보호와 개발을 둘러싼 갈등, 안보가치와 군부대 시설을 둘러싼 마찰 등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 ┌ 더불어 법령과 제도 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도민들의 접근방법이 다양해지고, 참여의지가 높아짐에 따라 공공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고충민원이 지속 증가하고 장기화 되는 양상을 띄게 되었다.
- ┌ 이처럼 시대의 빠른 변화와 복잡·다양해지는 사회 환경 속에서 기존의 권리구제 수단을 보완하고, 제3자적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도민의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 이에, 강원도는 도민들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자, 2012년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역옴부즈만(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을 설치·운영하여 도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 운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 II. 주요연혁

2012	7.5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의(의원발의)
	8.3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공포
	9.26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9명)
	10.4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사무국 설치·운영
	10.18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공포
2013	2.27	제5회 국민신문고 대상 옴부즈만 분야 수상
	4.22	고충민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도·시군 관계관 워크숍
	6.27	국민권익위 주관, 강원도 고충처리처 운영사례 발표
	7.16	아시아옴부즈만 회장 겸 태국 국가옴부즈만 방문
2014	2.27	제6회 국민신문고 대상 국무총리 표창(기관)
	7.1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정회원 가입(임시지위 획득)
	11.24	〈갈등조정 전문가 및 민원 관계관 포럼〉 개최
2015	9.17	고충민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도·시군 관계관 워크숍
	10.8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로 개편
	11.25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정회원(최종 승인) 가입 2017년(제15차)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총회 유치
2016	6.20	도민권익증진을 위한 업무협약(도 이·통장연합회)
	9.7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개최(이·통장한마음대회)
	11.25	세계옴부즈만협회(IO) 정회원 가입
	12.19	중소기업 관련 고충해결을 위한 업무협약(도 경제진흥원)
2017	3.29~31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개최(동해시, 양양군, 춘천시)
	5.16~19	제15차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총회 및 2017 평창 글로벌 옴부즈만 컨퍼런스 개최
	7.4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개최(이·통장한마음대회)
2018	1.15	지적·측량분야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
	7.16	법률분야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10.17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개최(화천, 유관기관 합동)
2019	6.17	위원회 위원 위촉 및 위원장(김원동) 선출
	10.18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개최(속초, 유관기관 합동)
	10.21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
2020	5.22	위원회 신규위원 위촉(2명)
	8.19~21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개최(홍천군, 태백시, 영월군 / 권익위원회 합동)
	5~6월	비대면 차량활용 위원회 홍보 추진(도내 전통시장 중심)
	10.29	위원회 신규위원(3명) 및 연임위원 위촉(2명)
2021	5.25	취약계층 맞춤형 〈이동신문고〉 개최(춘천시)
	6.9~11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개최(속초시, 양양군, 횡성군)
	9.1~2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개최(양구군, 춘천시)
	6.17	위원회 신규위원(1명) 및 연임위원 위촉(1명)
	10.22	도민 권익증진을 위한 업무협약(강원도 주민자치회)
	11.9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개최(철원군)

## 제2장

# 구성 및 운영



## I. 위원회 구성

- 1) 위원회 조직 현황
- 2) 위원의 위촉과 구성
- 3)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현황

## II.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 1) 관할
- 2) 위원회의 주요 기능
- 3) 위원회의 주요 권한

## III. 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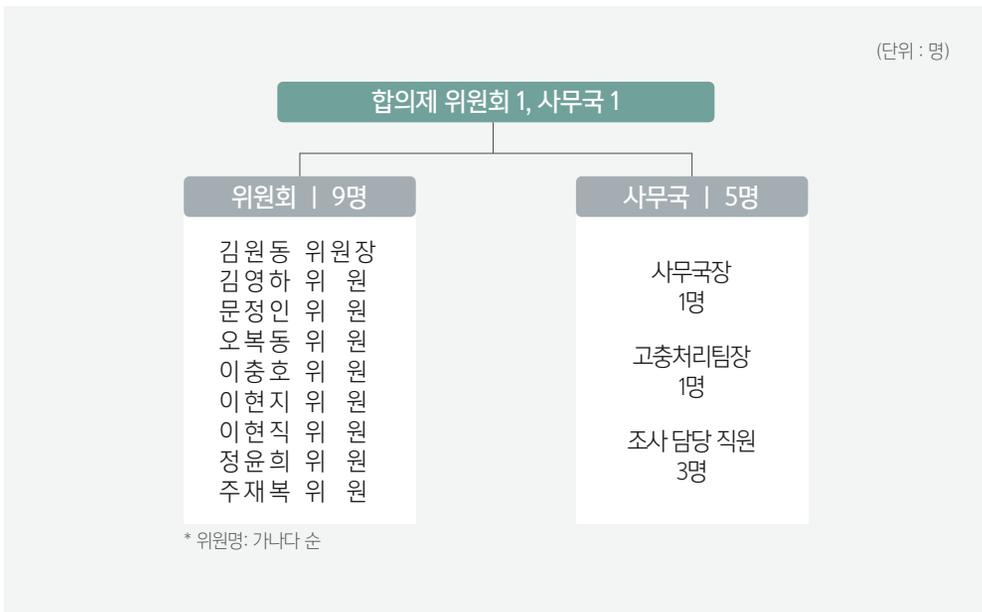
- 1) 고충민원의 정의
  - 2) 민원의 신청과 조사
  - 3) 위원회 심의·의결 및 통지
  - 4) 재심의 및 사후관리
  - 5) 고충민원 처리절차
- 〈참고〉 민원 신청방법

# I. 위원회 구성

## 1. 위원회 조직 현황(사무국 포함)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의회 및 집행기관과 독립된 합의제 위원회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조례 제5조)되어 있으며, 현재 9명의 위원이 민원에 대한 조사와 심의·의결을 담당하고 있다.
- 사무국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1명을 두어 위원회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강원도 소속 공무원 4명이 민원 조사 및 기타 행정업무를 보좌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 강원도사회갈등조정위원회 조직 구성



구분	합계	위원	사무국 직원					
			소계	사무국장	팀장	6급	7급	8·9급
현(명)	14	9	5	1	1	1	2	-

## 2. 위원회의 위촉과 구성

- 위원회의 위원 자격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조례 제5조 규정)이며, 이러한 자격을 갖춘 인물 중에서 민원조정 및 갈등관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9명을 선별해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 위원은 강원도의회회의 동의를 받아 강원도지사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결원되어 후임으로 위촉하는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우리 위원회는 위원 구성을 지역별·분야별로 고르게 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원도 지역 거주 위원과 타 지역 거주 위원을 고루 위촉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직자·학계·시민사회단체·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보다 폭넓고 다양한 시각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 2021년에는 총 9명의 위원 중 위원 2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1명의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고 1명의 위원을 연임 위촉하였다.

임기만료 위원			2021년 위촉사항		
만료일자	위 원 명	위촉구분	위촉일자	위 원 명	위촉구분
'21.6.16.	김 원 동	신규	'21.6.17.	김 원 동	연임
	민 세 영	연임		이 현 지	신규

## 3.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현황 (2021년 12월 기준)

구분	성명	주요경력
위원장	 김원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前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li> <li>· 現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li> </ul>
위원	 김영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YMCA 사무총장협의회장</li> <li>· 現 강원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상임대표</li> </ul>
위원	 문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세대학교 건축학 박사</li> <li>· 現 가톨릭관동대 건축학부 교수</li> </ul>
위원	 오복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前 한국국토정보공사 홍천·화천·강릉·춘천지사장</li> <li>· 現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시니어클럽 감사</li> </ul>
위원	 이충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前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과장</li> <li>· 前 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li> </ul>
위원	 이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원대학교 학사(법학), 법학전문대학원</li> <li>· 現 변호사 이현지 법률사무소</li> </ul>
위원	 이현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세대학교 석·박사(측량 및 GIS)</li> <li>· 現 상지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li> </ul>
위원	 정윤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대학교 환경계획 박사</li> <li>· 現 강원연구원(사회환경연구실)</li> </ul>
위원	 주재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現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장</li> <li>· 現 권익위 갈등관리심의회위원회 위원장</li> </ul>

## II. 위원회기능과 권한

### 1. 관 할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강원도 및 그 소속행정기관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며, 법령에 따라 강원도와 그 소속기관의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기관 및 개인까지도 포함한다.

#### 조례 제4조(관할권)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1. 도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
  2. 도에서 시·군에 위임한 사무의 경우 시·군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3. 도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4. 도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또는 출연기관

### 2. 위원회의 주요 기능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
  - 위원회는 '관할권 내에 있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으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 을 민원(고충민원 및 다수 인민원)으로 접수하여 조사한다.
  - 민원 조사 결과, 이러한 행위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변경·개선하거나 이행하게 하도록 시정권고 할 수 있다. 행정기관 등의 행위가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민원요구 사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불합리한 제도·정책 등에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민원의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법령 이외의 제도나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제도와 정책을 현실에 맞게 추진하고 사전에 민원을 예방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 ● 다수인민원 및 사회갈등의 원만한 해결

- 다수인과 관련된 사안 중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공익 또는 도정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안, 신청인의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큰 사안 등의 주요 갈등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 특히,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

### ●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상담 및 안내

-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기능 이외에도 일반민원에 대한 각종 문의내역을 상담하고 지원, 안내 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문의가 들어올 경우, 사무국 직원이 민원사항에 대한 소관 부서를 직접 확인 하고 연락하여 민원처리 절차 등을 확인한 뒤 민원인에게 담당 부서를 안내하기도 한다. 또한, 관할 권을 벗어난 고충민원 신청 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으로 이첩하거나 관련 구제절차 및 제도 등을 안내함으로써 민원인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다.

### ● 위원회 관련 홍보·교육 및 교류·협력

-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주요 민원 사례를 수록한 운영상황보고서를 매년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하고 있으며, 반사회보, 안내용 팸플릿 등의 홍보물 배부, 강원도 및 도내 시군 홈페이지 홍보, 위원회 주요 동향 보도자료 배포 등 위원회를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 이와 함께 도 및 시·군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처리 역량강화 워크숍 및 전문교육을 개최하여,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한 기법·사례 전수와 더불어 도와 시·군간 민원처리를 위한 연계·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또한,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참석, 해외 옴부즈만 벤치마킹과 국제기구 가입 등 국내·외 옴부즈만 기구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노하우와 정보를 공유·전수하고 있다.

### 3. 위원회의 주요 권한

#### ● 민원조사

-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위원회 위원 또는 사무국 직원의 조사가 실시된다. 정확한 민원 조사를 위해 위원회는 관련 기관 등에 설명을 요구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신청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에게 위원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신청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인, 관련 기관의 장 등은 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 권고 및 의견표명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주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경우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이에 대한 취소·변경·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행정기관의 행위가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표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 ● 감사의뢰

-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 과정에서 관련기관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감사부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조례 시행규칙 제29조(감사의 의뢰)

- 위원회는 민원의 조사 처리과정에서 관련기관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 ● 조사결과 보고 및 공표

-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 현황, 권고 및 의견을 표명한 내용, 관련기관의 처리결과 등에 대해 매년 도지사와 도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한다.

#### 조례 제14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감사의 의뢰)

- 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도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도의회에 특별 보고를 할 수 있다.

### III. 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

#### 1. 고충민원의 정의

● 고충민원이란?

-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다.

● 고충민원의 대상

- 고충민원의 대상은 위법·부당한 처분, 부작위 등으로 권익침해, 불편·부담이 되는 사항, 민원 처리기준 및 절차 불투명,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이다.

- 또한,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권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 요구, 그 밖에 행정과 관련된 권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 요구 등을 포함한다.

#### 일반민원 vs 고충민원

구분	일반민원	고충민원
법적 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
정의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 법정민원 :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신청 등록·등재 신청 및 신고, 확인, 증명 등 · 질의민원 : 행정업무에 관한 설명이나 해석 요구 · 건의민원 :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 요구 · 기타민원	·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한 민원

※ 관련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

## 2. 민원의 신청과 조사

### ● 고충민원 신청 · 접수

- 누구든지(재한 외국인 포함)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정대리인 이외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민원의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구술로 민원을 신청하는 때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은 그 내용을 확인 후 서명 또는 기명 날인)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접수 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민원 접수증을 교부한다.
- 신청된 민원 중 관할권을 벗어나거나 관련기관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이첩하거나 민원인에게 관련 절차 및 제도 등에 대해 안내(심의안내)한다.

### 조례 시행규칙 제4·5조

- **제4조(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재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에 조례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관할 대상(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에 관한 고충민원, 다수인민원, 사회갈등조정(이하 "민원"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 **제5조(신청의 대리 등)** ① 민원의 신청은 법정대리인 이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4호 서식의 대리인 선임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 ● 고충민원 조사

- 접수된 고충민원의 조사기간은 60일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6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민원처리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 등에게 연장사유와 처리예정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사회갈등 조정의 경우 사안에 따라 조사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다.
- 위원회는 민원의 조사를 위해 관련 자료에 대한 확인,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다.

### 조례 시행규칙 제9~11조

- **제9조(민원의 조사)** ① 위원회는 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조사위원을 지정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사통보서를 신청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조사기간)** ① 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 등에게 지체 없이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회갈등 조정의 경우 사안에 따라 제1항의 조사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추진 상황을 위원회에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 ● 민원의 이첩과 중지

-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중에서 관련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은 관련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민원신청인에게 이첩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이첩 받은 관련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위원회는 민원이 각하 사유에 해당하거나 민원의 내용이 거짓 혹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그 밖에 민원에 해당하지 않아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기관과 신청인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 민원처리 예외대상(민원의 각하)

- 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②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 ③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해당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 ④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⑤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 ⑥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 ⑦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⑧ 행정기관 등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

## 3. 위원회 심의·의결 및 통지

### ● 심의·의결

- 사무국은 조사가 완료된 민원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의한다. 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민원에 대한 결정은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의 유형으로 이루어지며, 복합된 내용의 경우에는 사안 별로 달리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조치(결정) 유형

- ① 시정권고 : 피신청인(대상기관)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변경·개선하거나 이행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
- ② 의견표명: 피신청인(대상기관)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제도개선 권고: 법령 이외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제도개선 의견표명 : 법령 이외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⑤ 합의 권고 :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
- ⑥ 조정 :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⑦ 기각 : 신청인의 요구가 타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 ⑧ 각하 : 고충민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⑨ 이첩 : 다른 기관 및 관련부서에 이첩하는 경우
- ⑩ 심의안내 : 다른 절차 및 제도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는 경우

#### ● 처리결과 통지

- 위원회는 의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민원의 결정내용을 신청인과 관련기관의 장 등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 4. 재심의 및 사후관리

#### ● 재심의

- 위원회의 결정 통지를 받은 관련기관의 장, 신청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의 결정대로 조치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법리오해, 사실관계 등의 중요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 신청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재조사하며,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민원을 위원회에 부의하거나 조사결과를 통지하는 것으로 종결할 수 있다.
- 아울러, 위원회가 동일한 내용의 민원 처리결과를 2회 이상 통지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신청하는 반복 민원의 경우, 같은 사람일 경우에는 종결처리 하고, 다른 사람의 경우 이미 처리한 내용의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재심의)

- ① 제26조에 따라 위원회의 통지를 받은 관련기관의 장, 신청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결정대로 조치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법리오해, 사실관계 등의 중요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재심의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의 장, 신청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재조사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제3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 위원회의에 부의하거나, 관련기관의 장, 신청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는 것으로 종결할 수 있다.

#### ● 결정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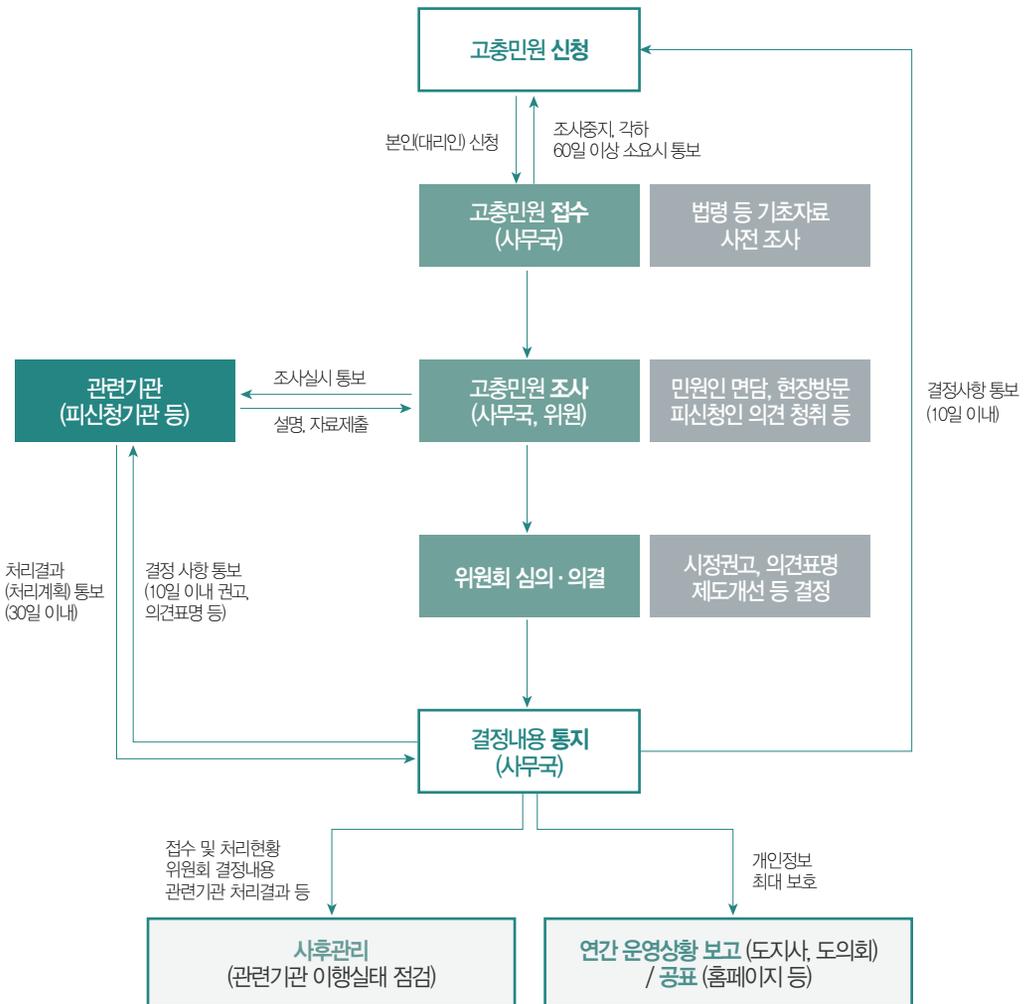
- 위원회는 권고 등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확인 및 점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요구에 대해 관련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조례 시행규칙 제28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 위원회는 제26조에 따라 통보한 권고 등의 이행실태를 관련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
  4. 그 밖에 위원회가 확인·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5. 고충민원 처리절차

- 처리기간 : 단순민원(즉시), 중대한 사안민원(60일)
- 처리절차



## 민원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주소

www.gwombudsman.co.kr  
전자민원(사회갈등조정위원회)



- 우편 신청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담당자 앞

\* 신청 민원접수 확인을 위해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원처리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



- 팩스번호

033-249-4133

\* 민원 송부 시 상단에 주소·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 민원접수 시간

평일 09:00 ~ 18:00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강원도청 별관 1층)를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

033-249-2301~3

민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전화를 통해 친절함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민원 신청시 유의사항

민원신청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를 사실 중심으로 정확하게 작성하시고 관련 증빙자료(문서, 사진 등)가 있는 경우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3장

# 위원회 운영성과



## I. 고충민원 처리현황

- 1) 강원도 고충민원 처리현황(총괄)
    - (1) 강원도 고충민원 처리현황( '12년 9월~ '21년)
    - (2) 위원회 고충민원 처리현황( '12년 9월~ '21년)
  - 2) 2021년 강원도 고충민원 처리현황
  - 3) 2021년 위원회 고충민원 처리현황
- 〈참고〉 2021년 위원회 고충민원 목록

## II. 2021년 위원회 활동 모습

- 1) 민원 현장조사
- 2) 정례회 개최
- 3) 이동신문고 운영
- 4)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5) 위원 변동사항
- 6) 사회갈등조정위원회 홍보 활동

## III. 위원회 운영 성과 (2012~2021년)

- 1) 옴부즈만 운영 내실화 및 조정 기능 강화
  - 2) 국내 지자체 대표 권익보호 기구로서 국제적 위상 제고
  - 3) 도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이동신문고” 운영
  - 4) 도민 권익 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 확대
- 〈참고 1〉 연도별 위원회 주요 활동 (2012~2021)
- 〈참고 2〉 연간 운영상황 보고서 발간 (2013~2020)

# I. 고충민원처리현황

## 1. 강원도 고충민원 처리현황(총괄)

### (1) 강원도 고충민원 처리현황( '12년 9월~ '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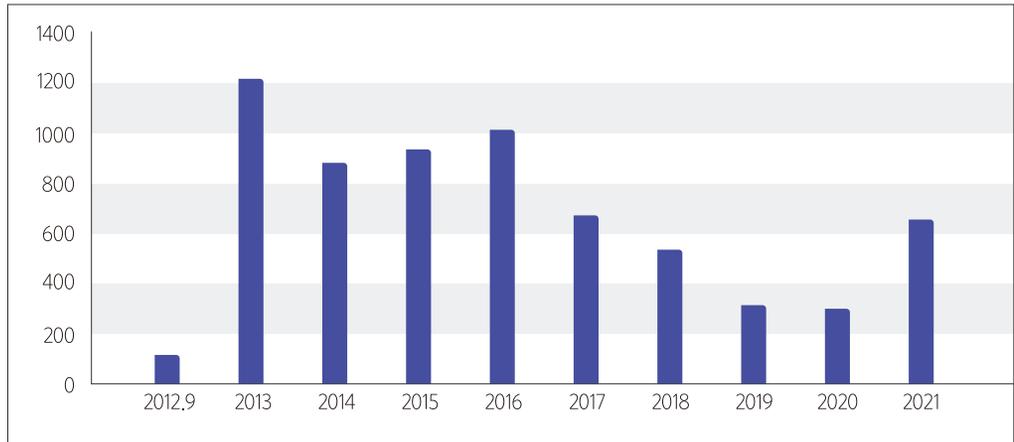
- 우리 위원회가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로 처음 설치된 2012년 9월부터 강원도에 접수된 고충 민원은 총 6,735건이며, 이 중 우리 위원회가 접수· 처리한 민원은 총 298건이다.  
※ 2015년 10월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로 개편
- 위원회에서 접수· 처리한 고충민원은 전체 고충민원의 4.4% 내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부분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특징이 있으며, 특히, 집단화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화된 조사와 심층적인 법률 검토 등이 필요하다. 사실확인 및 조사대상 기관도 여러 개의 기관(부서)이 연관되어 있으며, 복잡하고 민감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민원 해결에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 강원도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총괄)

구분	합계	위원회 접수·처리	상담, 불만 건의 등	생활불편 등	단순문의 등
합계	6,735	298	4,135	1,226	1,076
2012년 9월	128	17	64	4	43
2013년	1,207	39	872	141	155
2014년	897	24	692	30	151
2015년	930	29	552	92	257
2016년	1,016	25	623	88	280
2017년	662	24	407	154	77
2018년	548	23	360	125	40
2019년	367	45	195	102	25
2020년	313	40	104	152	17
2021년	667	32	266	338	31

\* '21년 국민신문고 등 접수민원 : <고충민원, 국민불편, 권익침해> 합산 건수

## 강원도 총괄 | 연도별 고충민원 처리건수 변화('12.9월~'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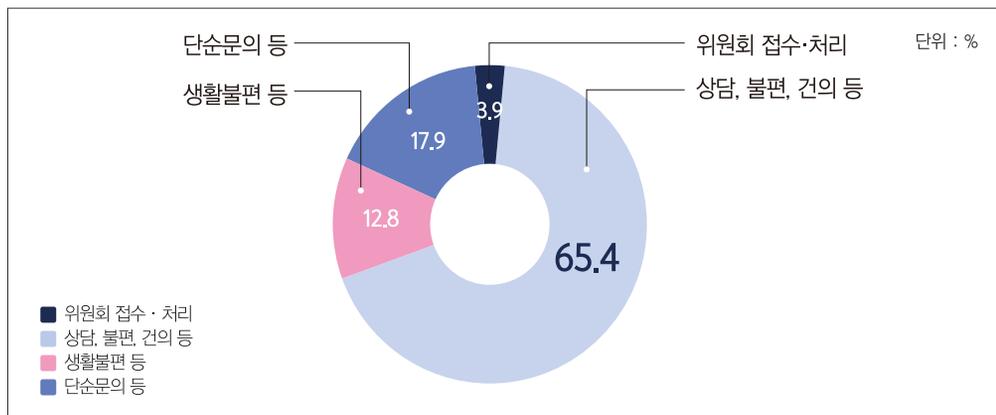


합계(건)	'12년 (9~12월)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6,735	128	1,207	897	930	1,016	662	548	367	313	667

\* (강원도 총괄) 국민신문고, 기관 홈페이지 접수·처리 고충민원 + 위원회 처리 민원

- 2012년 9월부터 2021년까지 강원도의 '연도별 고충민원 총괄 처리건수' 변화를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고충민원 건수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1년 다시 증가하는 형태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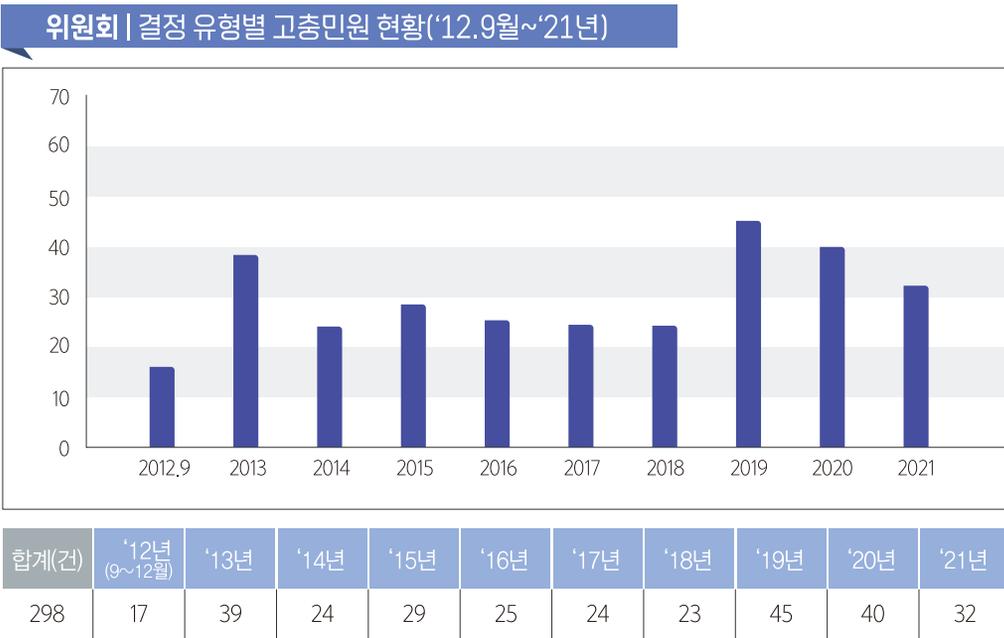
## 강원도 총괄 | 고충민원의 유형별 구성 현황('12.9월~'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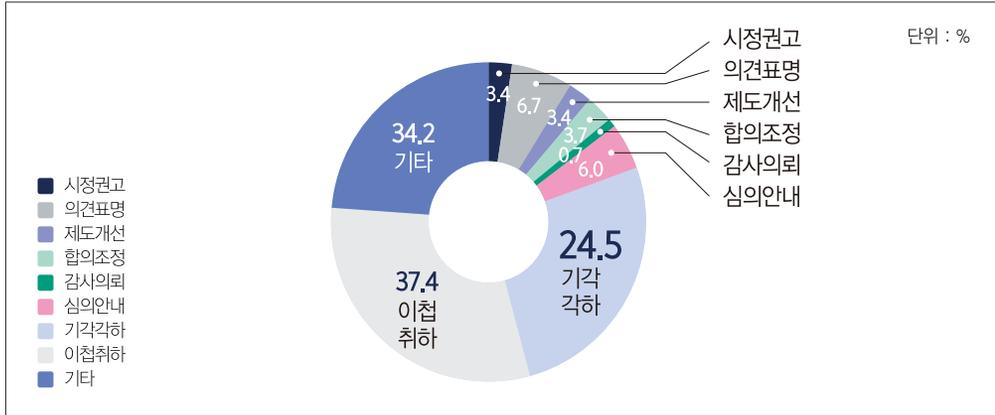
구분	합계	위원회 접수·처리	상담, 불만 건의 등	생활불편 등	단순문의 등
합계	6,735	298	4,135	1,226	1,076
비율(%)	100	4.4	61.4	18.2	16

- 고충민원의 유형별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9월부터 2021년까지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접수·처리한 건수는 총 298건으로 전체 고충민원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국민신문고, 강원도 기관 홈페이지,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관련부서, 사업소 등에서 처리한 고충민원 중 상담·불만·건의 등이 61.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생활불편 18.2%, 단순문의 등이 16%로 나타났다.

(2) 위원회 고충민원 처리현황( '12년 9월~ '21년)



**위원회 | 결정 유형별 고충민원 현황('12.9월~'21년)**



구분	합계	시정 권고	의견 표명	제도개선 (병행포함)	합의 조정	감사 의뢰	심의 안내	기각 각하	이첩 취하	기타
건수	298	10	20	10	11	2	18	73	52	102
비율(%)	100	3.4	6.7	3.4	3.7	0.7	6.0	24.5	17.4	34.2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2012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298건의 민원을 처리하였다. 위원회 결정유형별 현황을 보면 시정권고 10건, 의견표명 20건, 제도개선 등 10건, 합의조정 11건, 감사의뢰 2건, 심의안내 18건, 기각·각하 73건, 이첩·취하 52건, 조사중지 및 사무국 즉결 처리 등의 기타가 102건이다.

**위원회 | 민원신청인 주장에 대한 위원회의 수용률('12.9월~'21년)**



합계		인용		불인용(기각·각하)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26	100	53	42	73	58

- 위원회가 의결하고 처리한 민원 126건\* 중에서 민원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수용하여 결정한 '인용건수' 는 53건\*\*으로 전체 의결건수 126건 중 42%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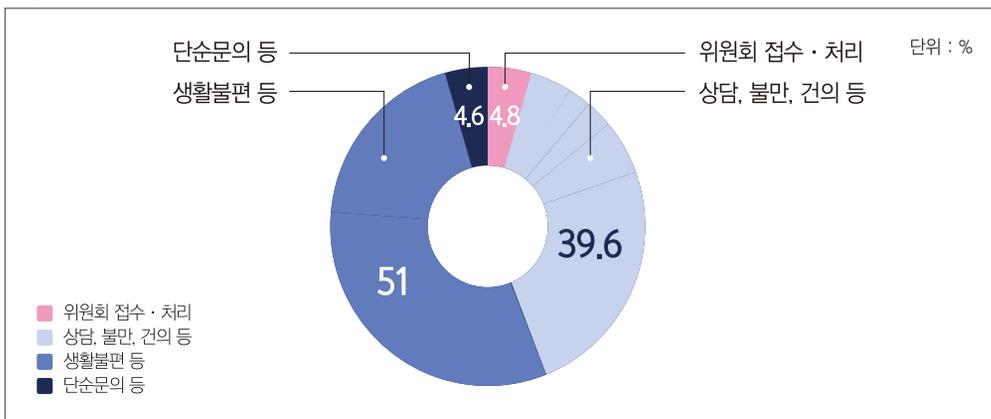
\* 위원회 처리건수 : 총 126건 <수용률 산정 시, 결정 유형 중 '심의안내, 이첩·취하, 기타' 는 제외>

\*\* 위원회 인용건수 : 총 53건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병행포함), 합의조정, 감사의뢰>

## 2. 2021년 강원도 고충민원 처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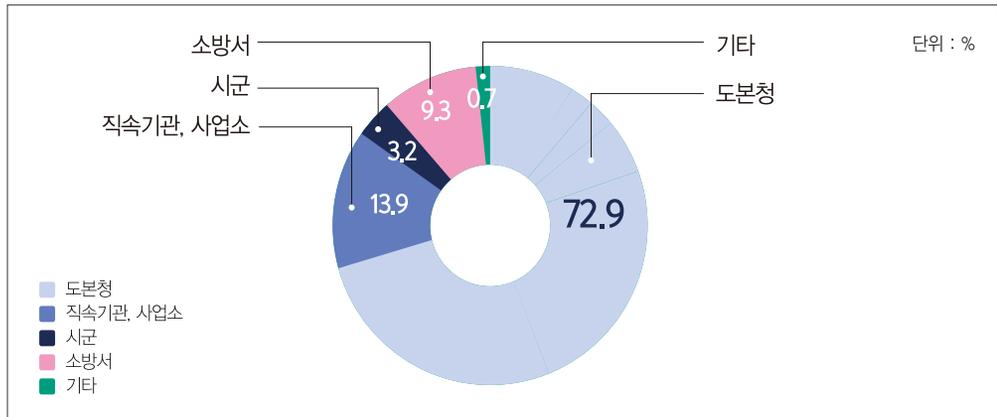
- 2021년 강원도가 접수·처리한 고충민원은 총 667건으로,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처리 32건, 국민신문고 및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 처리된 '상담, 불만, 건의 등' 이 264건, '생활불편 등' 이 340건 '단순문의 등' 이 31건으로 나타났다.
- 상담·불만·건의 분야에서는 도 및 시군 소속 직원의 소극행정 및 민원답변 불친절에 대한 불만,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요구 또는 감사요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생활불편 신고 분야에는 코로나 19 관련 마스크 미착용 신고 및 군인의 코로나 검사 관련 불편사항,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등 소방법 위반 신고 등이 있으며, 이중에서도 버스 운행 시간 및 요금, 노선 증설 요구 등 시외버스 운행과 관련된 불편 민원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2021년 강원도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구분	합계	위원회 접수·처리	상담, 불만 건의 등	생활불편 등	단순문의 등
합계	667	32	264	340	31
비율(%)	100	4.8	39.6	51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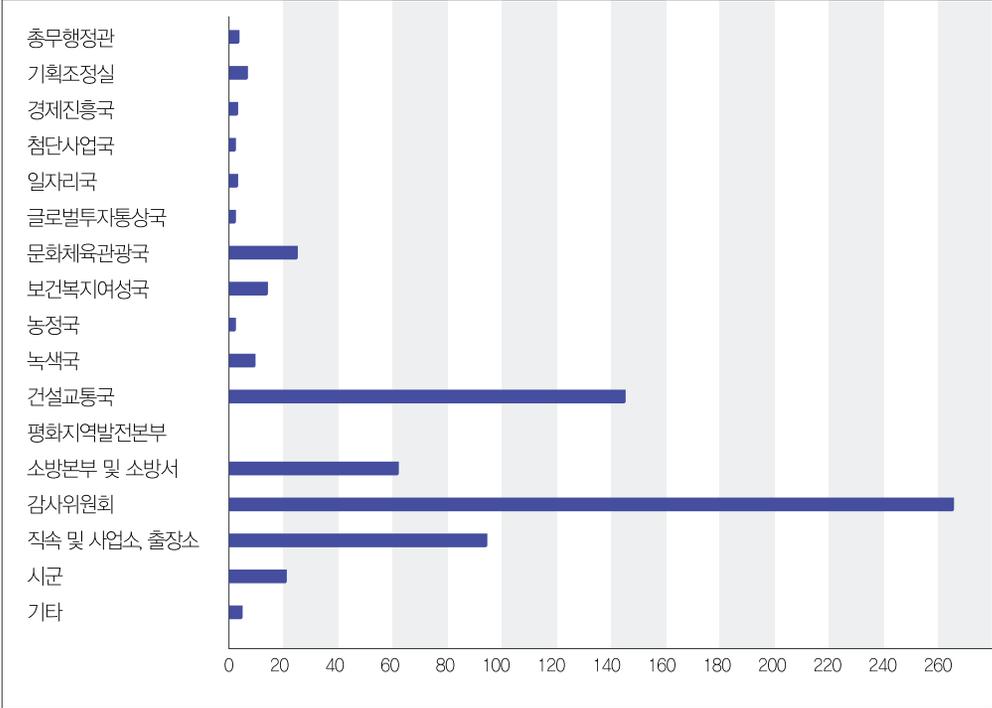
### 2021년 강원도 고충민원 접수기관 (피신청기관별)



구분	합계	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소방서	기타
합계	667	486	93	21	62	5
비율(%)	100	72.9	13.9	3.2	9.3	0.7

- 2021년 강원도에 접수된 민원을 피신청기관별로 보면, 도본청이 486건으로 72.9%를 차지했으며,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93건으로 13.9%를 나타냈다. 시군은 21건으로 3.2%를 소방서는 62건으로 9.3%, 기타는 5건으로 0.7%를 나타냈다.

2021년 강원도 고충민원 접수기관(피신청기관별 상세)



구분	합계	총무행정관	기획조정실	경제진흥국	첨단산업국	일자리국	글로벌투자통상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여성국	녹색국	건설교통국	평화지역발전본부	소방본부 및 소방서	감사위원회	직속 및 사업소 출장소	시군	기타	
2021 건수	667	4	7	3	2	3	2	26	14	2	9	145	0	62	267	95	21	5
비율 (%)	100	0.6	1.0	0.4	0.3	0.4	0.3	3.9	2.3	0.3	1.4	21.7	0	9.3	40	14.2	3.1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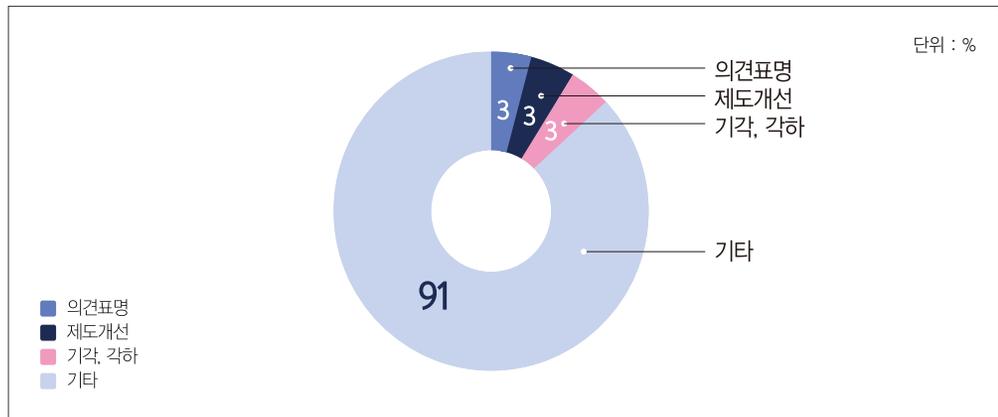
- 2021년 강원도에 접수된 고충민원 건수가 가장 많은 피신청기관을 살펴보면 감사위원회가 267건 (40%) 건설교통국이 145(21.7%)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가 95건(14.2%), 문화체육관광국이 26건(3.9%), 순서로 나타났다. 위의 상위 3개 기관 및 실국의 고충민원 건수는 총 438건으로서, 이는 2021년 강원도 고충민원 총 건수 667건의 65.6%를 차지했다.

- 피신청기관별로 전년대비 연내 고충민원 처리건수 중 해당기관이 차지하는 비율 증감내역을 살펴 보면 감사위원회(+28.5%), 건설교통국(+12.4%), 글로벌투자통상국(+3%) 순으로 증가했으며, 직속 및 사업소, 출장소(-10.4%), 소방본부 및 소방서(-9.9%), 경제진흥국(-3.4%) 순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고충민원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은 피신청기관(3개)에 접수된 민원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위원회에는 전반적으로 ‘공무원의 소극 행정 및 불성실한 민원응대에 대한 불만’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공무원 감사 및 행정조치 요청 등’ 이 많았고, 건설교통국 민원에는 ‘버스운행 시간 및 노선과 관련된 불편 등’ 교통 불편에 대한 민원이 대다수였으며, 그 외에는 ‘도로 공사로 인한 피해 및 불편’ 사항에 대한 민원이 대부분이었다.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에 접수된 민원은 도로관리사업소에 ‘도로 및 도로관련 시설물 관리(포장, 노면 등) 와 관련한 고충민원과, 환동해본부에 접수된 ‘방파제 안전시설물 파손 등’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타 : 강원도로 민원신청이 접수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타 공공기관 소관 등의 민원 해당

### 3. 2021년 위원회 고충민원 처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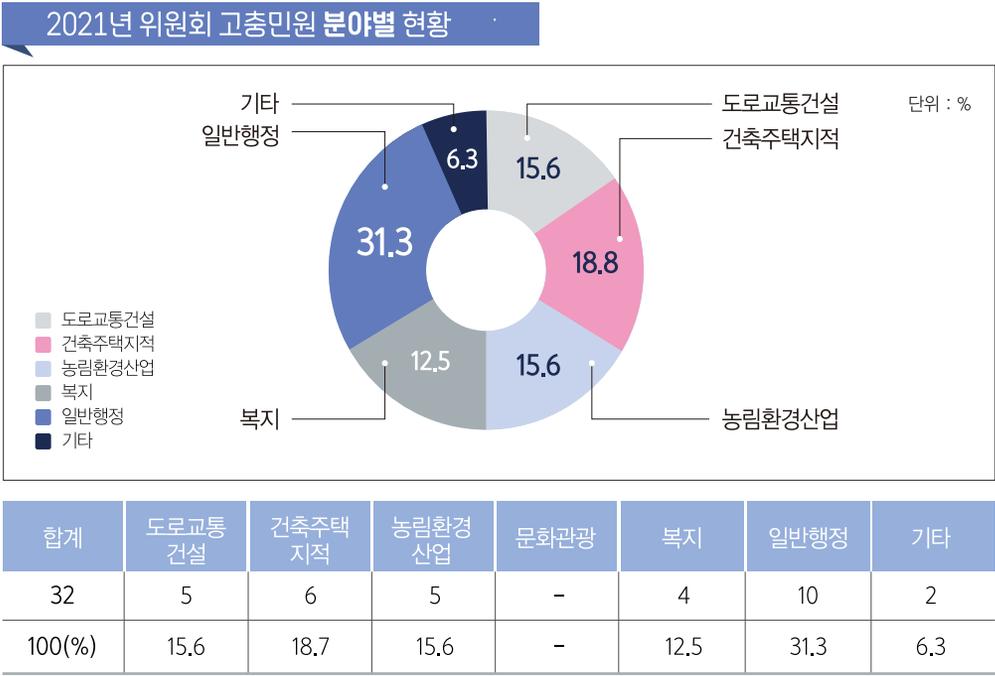
2021년 위원회 고충민원 유형별 현황



합계	시정 권고	의견 표명	제도개선 (병행포함)	합의 조정	감사 의뢰	심의 안내	기각 각하	이첩 취하	기타	조사중
32	-	1	1	-	-	-	1	-	29	-
100(%)	-	3	3	-	-	-	3	-	9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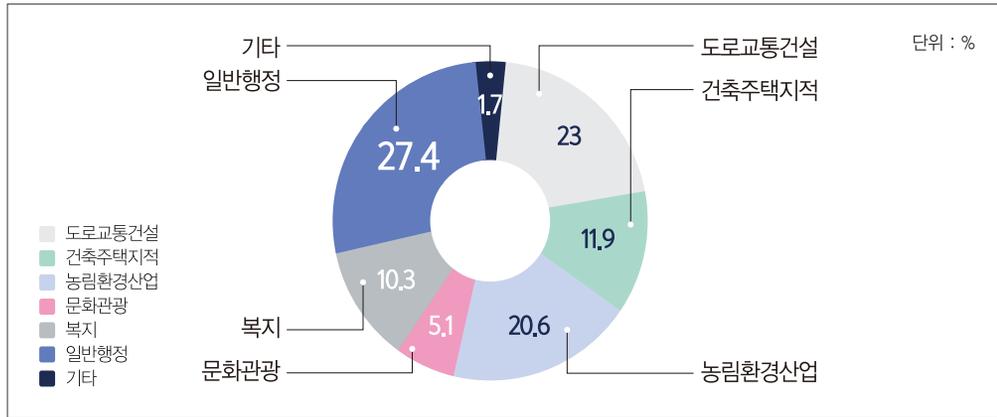
※ 처리건수: 고충민원의 접수일자(2021년 내) 기준

- 2021년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접수·처리한 고충민원은 총32건이며, 이 중 3건은 위원회 상정 및 의결을 통해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29건의 대해서는 위원회 사무국에서 즉시 답변하여 처리 완료하거나 소관 기관(시군 소관부서, 담당부서)을 안내하였으며, 사인 간의 분쟁과 같이 우리 위원회가 다룰 수 없는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신청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련 기관(분야별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및 제도 등을 안내하였다.



- 2021년 위원회와 사무국이 처리한 민원의 분야별 현황을 보면 일반행정 분야의 고충민원이 10건 (31.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건축주택지적 분야 6건(18.7%), 도로교통건설 분야 5건(15.6%), 농림환경산업 분야(15.6%), 복지 분야 4건(12.5%), 기타 2건(6.3%) 순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위원회 고충민원 분야별 현황('19년~'21년)



구분	합계	도로교통 건설	건축주택 지적	농림환경 산업	문화관광	복지	일반행정	기타
건수	117	27	14	24	6	12	32	2
비율(%)	100	23	11.9	20.6	5.1	10.3	27.4	1.7
2019	45	16	3	11	3	4	8	-
2020	40	6	5	8	3	4	14	-
2021	32	5	6	5	-	4	10	2

- 최근 3년간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분야별 현황을 보면 일반행정 분야가 27.4%, 도로·교통·건설 분야가 23%, 농림·환경·산업분야가 20.6%, 건축·주택·지적 분야가 11.9%, 복지 분야가 10.3%, 문화·관광 분야가 5.1%로 도로·교통·건설 분야와 일반행정 분야의 고충민원이 전체 고충민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또한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분야별 전년도 대비 증감내역을 보면, 건축·주택·지적 분야 1건 및 기타 2건 증가 외 나머지 분야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일반행정 분야가 14건에서 10건으로 4건이 감소(-28.5%)하여 가장 많이 감소했다.

**(참고) 2021년 고충민원 접수·처리 목록**

**① 위원회 의결**

연번	주요내용	관계기관/소관부서	결정결과
1	강원도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한 민원	강원도(00000원)	기각, 의견표명
2	의료원 직장상사의 부적절한 언행 조치 미흡	강원도(00의료원)	병행결정
3	교차로 구간 도로 연결허가 고충	강원도(강원도0000사업소)	기각

**② 사무국 처리(즉시답변, 소관부서 안내·연계)**

연번	주요내용	관계기관/소관부서	결정결과
1	전신주 무단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	한국전력,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즉시답변 및 안내
2	시유지 대부계약을 위한 농지원부 제출	속초시(회계과)	"
3	임대아파트 창틀(새시) 설치비용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
4	임대아파트 보증금 반환	태백시	"
5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	정부	"
6	개인정보 공개(법인 내부 징계사항 판매용 책자에 공개)에 따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
7	속초시 새뜰마을사업 관련 민원	속초시	"
8	코로나 확진자 밀접접촉자 격리에 따른 생활지원금 지급 지연	강원도(복지정책과)	"
9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관련 민원	삼척시	"
10	홍천군 공용차량 보험가입 용역 관련 민원	홍천군(재무과)	"
11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 사업	강원도(중국통상과)	"

연번	주요내용	관계기관/소관부서	결정결과
12	공용주차장이용에 관한 건	동해안 6개시군 (교통과,공영주차장관리부서)	즉시답변 및 안내
13	경제적 도움 요청	홍천군(하남면사무소)	"
14	불법산지전용에 대한 대집행 미이행	홍천군	"
15	장애등록 및 장애연금 지원	횡성군	"
16	토지 개별공시지가 부적정 이의제기	횡성군	"
17	보수공법 선정(신기술, 특허) 용역관련 민원	삼척시	"
18	마을 진출입로도로점용허가 관련 민원	동해시	"
19	속초 수소 충전소	강원도(에너지과)	"
20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관련 민원	원주시	"
21	건축 인허가 관련 민원	영월군	"
22	주문진 제2농공단지공사로 인한 피해	강릉시(기업지원과)	"
23	원주의료원 민원 응대 불량 등	공공의료과(원주의료원)	"
24	인제군 기린면 북리에 있는 삼거리의 교통안전 개선이 필요	인제군	"
25	매일 반복되는 민원접수로 인한 고충	강릉시(사회갈등조정위원회)	"
26	집합건물(속초 마리나베이) 분쟁조정 신청	속초시	"
27	관습도로인정 및 주위 토지 통행권 판결 후 협조처리 불능	평창군(미탄면사무소)	"
28	마을 상수도 연결 요청	원주시(감사관)	"
29	원주보건소 어린이 대상 코로나 검사 관련	원주시(감사관)	"

## II. 2021년 위원회 활동 모습

---

### 1. 민원 현장조사



「분진 피해 방지 요청」 민원조사 - 의견청취 (2021.5월)



「분진 피해 방지 요청」 민원조사 - 현장확인 (2021.5월)



「분진 피해 방지 요청」 민원조사 - 현장확인 (2021.5월)



「분진 피해 방지 요청」 민원조사 - 현장확인 (2021.5월)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가옥피해 구제요청」 민원조사 - 의견청취 및 현장확인 (2021.7월)



「교차로 구간 도로 연결허가 고충」 민원조사 - 의견청취 및 현장확인 (2021.11월)

## 2. 정례회 개최



| 정례회 2021. 3. 19.



| 정례회 2021. 6. 18.



| 정례회 2021. 10. 22.



| 정례회 2021. 11. 19.

### 3. 이동신문고 운영



도 자체 취약계층 맞춤형 이동신문고 - 행정복지센터내 홍보 춘천시 효자동 2021.5.25



도 자체 취약계층 맞춤형 이동신문고 - 방문 상담 춘천시 효자동 2021.5.25



| 권익위원회 주관 이동신문고 합동상담 속초시 2021.6.9.



| 권익위원회 주관 이동신문고 합동상담 양양군 2021.6.10.



| 권익위원회 주관 이동신문고 합동상담 | 흥성군 2021.6.11.



| 권익위원회 주관 이동신문고 합동상담 | 양구군 2021.9.1.



| 권익위원회 주관 이동신문고 합동상담 춘천시 2021.9.2.



| 권익위원회 주관 이동신문고 합동상담 철원군 2021.11.9.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국민권익위, '지역형 이동신문'

2021-08-28 송태림 기자

#### 8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 권익위 '이동신문고' 운영

주요뉴스 속초시, 우강에 여형 정보 제공 홈페이지 개설

키보드 단축키 안내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지역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합니다.

지역형 이동신문고는 권익위의 각분야별 전문조사관이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하는 민원 서비스입니다.

다음달(9월)1일 양구군을 시작으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자체의 행정처분과 관련한 고충이나 불편을 겪은 사람, 기타 법률상담을 원하는 지역주민의 민원해소에 도움을 주겠다 계획입니다.

| 권익위원회 주관 이동신문고 합동상담 언론보도(G1뉴스)

**江原日報**  
[양구]오늘 양구서 권익위 '이동 신문고' 운영  
양구국민체육센터 2층

지역 양구 2021-9-1 (수) 16면 - 정래석 기자 기자단 윤근자 기자

[양구]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동 신문고가 1일 양구에서 열린다.

이동 신문고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양구국민체육센터 2층에서 진행된다.

이번 양구 인제·회천지역 이동 신문고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소비자원, 고용노동부 상담관, 강원도사회갈등조정위원회 등 공공기관에서 20여명의 상담위원이 참여한다.

상담위원들은 행정·문화·교육, 국방·보훈, 경찰,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사회복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지적(地積), 노동관계, 서민금융 등 15개 분야에 대해 주민들과 상담한다.

군은 지난 17일까지 이동 신문고 상담예약을 접수했으나 당일 국민체육센터를 방문해도 상담은 가능하다.

정래석기자

| 권익위원회 주관 이동신문고 합동상담 언론보도(강원일보)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와 국민권익위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 고충민원 현장상담 • 읍부즈만 • 민원조사

**고충민원 현장 상담 일정**  
오전10시 ~ 오후4시

1. 속초시 (2021.6.9., 속초시청 대회의실)
2. 양양군 (2021.6.10., 양양군청 대회의실)
3. 횡성군 (2021.6.11., 횡성국민체육센터 체육관)

강원도

| 권익위원회 주관 이동신문고 - 홍보 이미지

#### 4.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체결



강원도 주민자치회와 업무협약체결 2021.10.22



강원도 주민자치회와 업무협약체결 2021.10.22

## 5. 위원 변동사항



| 감사패 수여 - 연임 임기만료 위원(민세영) 2021.6.17.



| 위촉장 수여 - 연임 위촉위원(김원동) 2021.6.18.



| 위촉장 수여 - 신규 위촉위원(이현지) 2021.6.18.



| 위촉장 수여 및 환담 - 위촉위원(김원동, 이현지) 2021.6.18.



| 위원 위촉사항 언론보도 - 강원일보 2021.6.21.



| 위원 위촉사항 언론보도 - 강원도민일보 2021.6.21.

## 6. 사회갈등조정위원회 홍보 활동

### (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차량 활용 비대면 홍보



| 차량활용 비대면 홍보 문구



| 홍천중앙시장



| 횡성전통시장



| 영월주천시장



| 평창미탄시장



| 춘천풍물시장



| 인제시장



| 양구중앙시장



| 화천사창리5일장

(2) 위원회 홍보용 현수막 게시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홍보용 현수막 제작(안) \*4개 시군, 8개소 설치



삼척시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3) 시군 홈페이지



| 홈페이지 게시용 배너(안)



| 시군 홈페이지 배너 게시 모습

(4) 위원회 안내 홍보 리플릿 제작·배포



| 앞면

| 뒷면





▶ 앞면



▶ 뒷면



## 사회갈등조정위원회 라디오 홍보 실시

12.25.~1.8.(2주간)  
춘천MBC(원주, 강릉권 포함)

AM 11:59, 20:59  
FM 09:29, 19:29, 21:29



방송문구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 김원동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도민들의 고충민원을 도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할 목적으로 설립된 도민 권익보호기관입니다.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처분으로 인해 불이익을 겪으신 도민들께서는  
주저마시고 우리 위원회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신청방법은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권익보호에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함께하겠습니다.

### III. 위원회 운영 성과(2012~2021년)

#### 1. 옴부즈만 운영 내실화 및 조정 기능 강화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2012년 9월 도내 주요 고충민원과 갈등을 도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의 지역 옴부즈만인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로 출범하였다
- 2015년 10월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갈등 조정 및 전문조사관 채용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 및 조직 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바탕을 공고히 다졌다.
- 또한, 국내 대규모 공공갈등 해결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위원을 포함하여 교수, 변호사, 연구원,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있는 위원들을 위촉하여 매달 정례회를 개최함으로써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복잡·다양한 고충민원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도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억울함이 없는 강원도'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도내 곳곳의 도민 불편사항을 찾아 성심껏 상담·해결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민원행정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 제2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국무총리 표창 수상)



| 위원회 간담회



| 정례회의 개최



| 민원 현장조사

## 2. 국내 지자체 대표 권익보호 기구로서 국제적 위상 제고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2016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11차 IOI World Conference 총회에서 국내 지자체로는 최초로 세계 옴부즈만협회(IOI, 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였다.
- 한편, 2015년 11월에는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Asia Ombudsman Association)에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2017년에는 평창 알펜시아에서 AOA 회원국 대표단 및 국내·외 옴부즈만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제15차 아시아 옴부즈만협회(AOA) 총회 및 컨퍼런스”를 개최(5.16~5.19, 4일간)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지자체 대표 권익보호 리더로서의 국제 위상을 강화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 2021년에는 IOI 아시아 지역 이사직 선출 및 온라인 회의 참석 등 회원국으로써 권리행사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국제 옴부즈만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위상을 확고히 하고, 도민의 권익 실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 3. 도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이동신문고” 운영

- 우리 위원회는 전화,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민원 접수 창구를 마련하여 도민들의 의견 하나하나를 소중히 듣고, 보다 친밀하게 소통하고자 노력하였다.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온라인 접수를 강화하였고, 「이동신문고」를 매년 운영하여 고충과 애로사항을 찾아가서 직접 듣고 같이 고민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
- 또한 2018년부터 강원도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도 인권센터 등과 합동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2021년 5월, 춘천시 효자동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거주지를 방문하여 불편사항을 살피고 현장에서 고충사항을 직접 상담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지역형 이동신문고’ (21년 6월,9월,11월)를 도내 6개 시군에서 합동 운영하였다. 우리 위원회는 이동신문고를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도민들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점차 늘리고 도민 편의 도모 및 고충 해결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 4. 도민 권익 증진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 확대

- 우리 위원회는 고충민원 및 집단민원 등 사회갈등을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단체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 2016년 6월 강원도 이·통장연합회를 비롯하여, 12월에는 강원도 경제진흥원과 업무 협약을 맺어 각종 갈등이나 분쟁 요소들을 미리 찾아 해결하며,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특히, 2018년부터는 고충민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적분야 및 생활법률 분야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합동으로 상담을 추진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강원도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 2019년 10월에는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도내 근로자와 사업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 또한, 2021년 10월에는 강원도 주민자치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에 산재된 고충민원의 신속해결 및 도민 권익 증진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향후 주민자치박람회와 연계한 이동신문고 운영도 계획 중으로,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관련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도민들의 고충 해소와 권익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 근로복지공단(춘천지사)과 업무협약 2019. 10. 21.



| 강원도 주민자치회와 업무협약 2021. 10. 22.

(참고1) 연도별 위원회 주요 활동 (2012~2021)

2012년(출범)

중양일보

2012년 09월 27일  
R01면 (충청/강원)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출범  
전국 16개 시·도 중 처음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가 출범했다.

강원도는 26일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9명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10월부터 공식 운영된다. 강원도는 그동안 갈등민원을 관료적 시각이 아닌 도민의 입장에서 처리하고, 도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위원회 설

치를 추진했다. 지난 8월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9월 10일 관련 시행규칙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고충처리위원회가 설립된 것은 처음이다.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는 앞으로 도와 소속기관의 행정 각 분야에서 제기되는 고충민원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운영된다. 또한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는 개선

해 나가는 등 도민 권익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활동 대상은 석산 개발, 환경, 폐광, 농림, 수산 분야 등 다수인 관련 민원을 중심으로 선별해 집중 조사 및 연구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위원회의 운영으로 날로 복잡 다양해지는 사회환경에서 각종 갈등을 유발하는 고충민원의 해소와 완충 조정역할을 통해 화합과 상생의 공동체를 만드는 견인차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찬호 기자 kabear@joongang.co.kr

(17.3\*4.8)cm

강원도민일보

2012년 02월 04일  
02면 18쪽(1)

도민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도의회, 조례안 발의... 민원처리 갈등 등 해결

강원도의회가 도민들의 고충 민원을 해결해 줄 전문기구 설치 추진에 나선다.

김기홍(원주·새누리당) 의원은 5일 개최하는 제221회 정례회에서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16개 광역 시·도 중에서는 처음 추진되는 이번 조례안은 도 및 소속기관에 대한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정책의 갈등 사항에 대해 민원인의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도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불합리한 행정제도가 있거나 운영방식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내는 기능도 갖추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

다.

위원회는 대학 및 연구기관 출신 학자, 4급이상 공무원, 판사·검사·변호사,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 등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추천인사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담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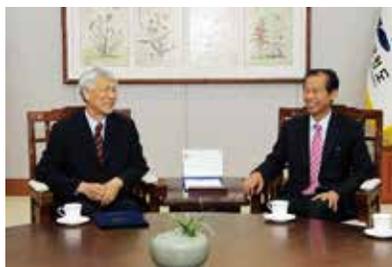
위원회가 구성되면 △도 및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 민원의 조사와 처리 △민원과 관련한 시장광고 또는 의견표명 △처리불 완료한 고충민원의 결과 보고 △행정제도 개선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 △민원사항 상담 및 처리 지원 △규제기구 및 외국 권역구제기관 간 협력 및 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어진 best@hado.net  
(10.2\*12.1)cm

2013년



고충민원 관계자 워크숍  
2013. 04. 평창 보광휘닉스파크



신철영 위원장 위촉  
2013. 05. 강원도청 통상 상담실



태국 옴부즈만 강원도 방문  
2013. 07. 강원도청 금강관

강원도인일보

도, 옴부즈만 국제기구 가입 추진

2013년 7월 17일  
02면 1열 1단

세계-아시아 옴부즈만협 2곳  
정부 적극 지원...가능성 커

강원도가 국내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옴부즈만 국제기구'에 가입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신행원)'의 행정 서비스와 도민 권익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옴부즈만 국제기구에 가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도가 가입을 추진하는 옴부즈만 국제기구는 세계 옴부즈만 협회(OIO)와 아시아 옴부즈만 협회(AOA) 2곳.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OIO와 AOA 가입 조건 등을 검토한 결과, 강원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키로 해 가능성이 높다.

이날 도를 방문한 태국 국가 수석 옴부즈만(장관급)인 파닛 나타린프리와 에이 아사아 옴부즈만 협회장 일행과 김기산 국민권익위 국제 교류담당관장은 지난 16일 오후 2시와 옴부즈만 국제기구' 가입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 지사는 이날 집견에서 "광역 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강원도가 고충처리위원회를 설립했다"며 "국제기구에 공식 가입하면 도민 권익 향상뿐 아니라 동계올림픽 홍보 등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파닛 나타린프리와 회장은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은 모델이 사례"라며 "오는 18일 AOA 아시아에서 강릉도가 가입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 옴부즈만 협회(OIO)는 1876년 설립돼 현재 100개 국 136개 기관이

가입해 있으며 사무국은 오스트리아에 있다. 또 아시아 옴부즈만 협회는 1999년 설립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사무국이 있고 일본 중국 태국 등 17개 국 24개 기관이 가입해 있다.



■옴부즈만협회-옴부즈만협회는 대리전, 대변자의 뜻을 가진 스페셜이 'ombuds'에서 유래한 단어로 1809년 스웨덴에서 사법부나 입법부에 비해 권력이 커진 행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생겨났다. 정부의 권위에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제도는 행정조직뿐만 아니라 언론, 사회, 정치, 경제 각 분야에 도입되면서 국민의 불만을 수렴하고 이를 시정하는 제도로 발전했다.

05-12-100

2014년



**강원도, '국민신문고 대상' 총리 표창 수상**

강원도는 국민신문고 대상  
옴부즈만 부문에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함께 도청 기획관실  
임형준 주무관도 옴부즈만  
개인부문 유공자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국민신문고 옴부즈만  
개인 부문 국무총리

강원도의 이번 수상은 지난해  
국민신문고 옴부즈만 개인 부문  
국무총리표창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이번 수상은 전국 광역 및  
기초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동안 고충민원 처리 실태  
확인조사 결과 결과 강원도가  
우수기관, 임형준 주무관이  
유공자로 선정됐다.

**강원도만일보**

**곽태섭 도 고충처리위원회 사무국장 국무총리표창**

곽태섭(57) 도 고충처리위  
원의 사무국장이 새정부 출범  
이후 도에서는 처음으로 국무  
총리표창을 수상했다.  
곽 국장은 지난 27일 서울 프  
레스센터 5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국민권익의 날  
및 국민신문고 대상' 시상식에  
서 옴부즈만 개인활동부문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곽 국장은 지난해 강원도고

충처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강원도가 이질적으로 추진하  
고 있는 중견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 사업 민원과 골프장 집안  
민원 해결에 노력한 공로를 얻  
어 수상했다. 언론부



2014 옴부즈만 글로벌 컨퍼런스 참석  
2014. 07. 서울 프레스센터



제2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2014. 03. 강원도청 태백관



갈등조정 전문가·민원 관계관 포럼  
2014. 11. 강원발전연구원



2015년

## 강원도민일보

2015년 09월 22일  
02면 (종합)

## 도사회갈등조정위 출범

강원도는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의 명칭을 '강원도 사회갈등 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기능과 조직을 전면 확대 개편해 10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출범하는 강원도 사회갈등 조정위원회는 그동안 도민들의 고충 민원 해소라는 기존의 기능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집단 민원과 갈등 문제에 대한 조정과 해결에 적극 나서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집단 민원 및 갈등 문제는 기존에 발생 후 조정 해결 방식에서 발생 단계부터 조정 해결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처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를 위해 강원도는 전문조사관제를 도입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갈등 조정 역할을 상설화,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백오인

(5.9~12.0)cm

## 江原日報

2015년 11월 27일  
02면 (종합)아시아옴부즈만협회 총회  
2017년 평창서 개최 확정

2017년 제15차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Asian Ombudsman Association) 총회가 평창에서 열린다.

도는 지난 25일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제14차 AOA 이사회 및 총회에서 도가 차기인 2017년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유

치 신청을 했으며 이날 총회 때 러시아에서 독립한 조지아공화국과 경합을 벌인 끝에 회원국 대다수의 지지를 받아 확정됐다. AOA는 1996년 설립돼 22개국 35개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7년 AOA 총회는 4~7월 사이 3일간에 걸쳐 평창 일원에서 22개국 35개 권익보호기관(옴부즈만)이 참여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총회에서는 국내외 옴부즈만, 주한 외국대사관, 학계인사 등 400여명이 참가해 옴부즈만 제도와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을 펼친다.

이성현기자 sunny@kwnews.co.kr

## 강원도민일보

2015년 11월 27일  
02면 (종합)

강원도가 지난 25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이사회 및 총회에서 2017년 열리는 제15차 AOA 총회 개최지로 선정됐다.

2016년

**강원도민일보** 2016년 02월 23일 19면 (지역)



**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정례회** 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제42차 정례회가 22일 도청 신관회의실에서 신철영 위원장, 노승만 강원발전연구원 기획경영실장, 광태섭 상임위원과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영

(6.8\*6.6)cm

**강원도민일보** 2016년 10월 18일 10면 (인물)



**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신임 위원 위촉장 수여**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위원장 신철영)는 17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신임 조정위원 6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7.5\*6.3)cm



제1기 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2016. 09.



민원 현장을 찾아가는 위원회  
2016. 06. 평창 알펜시아

## 매일경제

2016년 12월 19일  
1면 (출판)

### 중소기업 권익신장·고충해결로 '행복한 강원만들기' 협력

(춘천=연합뉴스) 일부면 기자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와 도내 중소기업 종합지원 전문기관인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이 도내 중소기업 권익보호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19일 원주에서 일선 기업경영 현장의 각종 민원과 갈등해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도민과 중소기업 권익 신장, 경영상 불편한 고충 민원 해결,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상호 협력해 현장 중심 민원행정 실현에 나선다.

공공정책 수립·추진 때 이해관계 충돌을 효율적으로 조정·관리한다.

중소기업 육성·편익제공을 위한 지원 방안 모색,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서로 협력한다.

도내에는 총 13만3천314개 기업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99.9%인 13만3천240개가 중소기업으로 도민 51만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서동업 도 산업경제진흥원장은 "이번 협약은 도내 중소기업 고충 민원 해결과 함께 권익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철영 도 사회갈등조정위원장은 "앞으로 각종 행정규제나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상담 해결해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사회갈등조정위는 지난 6월 일선 생활현장에서 신속한 고충 민원 해결로 실질적인 도민 권익이 증진할 수 있도록 도 이통강연합회와 업무협약을 했다.

앞으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복지 관련 기관 단체 등과도 업무협약을 해 권익증진을 위한 '인권 네트워크'도 구성할 계획이다.

limbo@yna.co.kr

**강원도민일보**

## 이·통장이 사회갈등 조정 나선다

**도 이통장연합회·사회갈등조정위원회 업무협약  
민원 조율 협조 주민 권익보호 사다리 역할**

강원도 행정의 오세철은 역할을 하고 있는 도내 이·통장들이 집단민원 등 사회갈등 초기단계부터 조정에 나서기로 해 호기가 주목된다.

강원도 이·통장연합회(회장 윤천호)는 20일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위원장 신성경)와 원창양평센터에서 생활현장의 민원과 갈등을 신속처리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통장들은 갈등이나 분쟁요소들을 미리 찾아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민원행정을 실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원 일선에서 행정과의 거고역할을 하고 있는 도내 2개 시·군 의 405명의 이·통장들이 고충민원을 처리해 최일선에 나선다.

이·통장들은 주민들이 느끼는 고충이나 불만사항들을 발생단계에서부터 파악, 지역 여론을 가장 빠르고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민원도 처리의 공공갈등관리도 현장입찰함으로써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통장들은 도내 산하기관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고충민원을 제기할 경우 무엇보다 빠른 조율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계획이다.

또 제도권 밖에 있는 소외·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지원 수요 파악에도 공조하기로 했다.

윤천호 도이·통장연합회장은 "지역 곳곳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성경 사회갈등조정위원장은 "불의 현상 최일선에 있는 이·통장 분들이 나서주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행정을 보다 총총하게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사회갈등조정위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민익선을 단련 네트워크'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통장협의회에 이어 도내 복지단체와 중소기업, 각종 사회단체와도 업무협약을 잇달아 체결, 사전 갈등관리 의 책을 넓어나갈 방침이다.

강원도 이·통장 연합회  
신성경 위원



강원도 이·통장연합회(회장 윤천호)와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위원장 신성경)는 20일 원창 양평센터에서 민원과 갈등을 신속처리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윤천호 도이·통장연합회장은 "지역 곳곳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성경 사회갈등조정위원장은 "불의 현상 최일선에 있는 이·통장 분들이 나서주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행정을 보다 총총하게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사회갈등조정위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민익선을 단련 네트워크'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통장협의회에 이어 도내 복지단체와 중소기업, 각종 사회단체와도 업무협약을 잇달아 체결, 사전 갈등관리 의 책을 넓어나갈 방침이다.

강원도 이·통장 연합회  
신성경 위원



세계옴부즈만협회 정회원 자격 획득  
2016. 11.

2017년

강원도민일보

2017년 05월 12일  
10면 1면 상단

# 세계 각국 옴부즈만 기관 운영노하우 배운다

AOA총회·글로벌 컨퍼런스  
16일 평창 알펜시아서 개막

제15차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총회 및 2017평창 글로벌 옴부즈만 컨퍼런스가 오는 16일부터 4일간 평창 알펜시아에서 개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강원도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아시아 옴부즈만의 발전과 미래'를 주제로 20개국, 35개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회원기

관과 초청연사, 주변외국대사, 국내옴부즈만,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서 총 4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제15차 AOA총회는 창립 20주년을 기념 AOA역사상 처음으로 지역에서, 국가와 지역 옴부즈만이 함께 주최하는 행사여서 관심을 받고 있다. 도는 통계를림피크를 앞두고 평창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인 만큼 올림픽과 도의 관광자원 홍보를 행사의 주요 목표로 삼아 대회를 준비했다.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2015년 11월 국내 지자체 최초로 AOA정회

원 지위를 획득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는 세계옴부즈만협회(OD) 정회원 이 됐다. 1996년 설립된 AOA는 각국의 옴부즈만 경험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모델은 논의하기 위해 2년(홀수년) 주기로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옴부즈만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세계 옴부즈만 기관의 다양한 사례와 노하우를 배우는 절호의 기회"라며 "평창 통계를림피크와 아름다운 강원도를 전세계에 알리는데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17-2-780m)

江原日報

강원도 시흥시가 2013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민후민관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할 처분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한 고충민원을 사전에 구제하기 위한 제도도 시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에 대한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했다. 시민후민관의 핵심적인 역할은 시민의 권익구제이지만 이 밖에도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갈등 해소, 불평리해 제도 개선, 민원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시민후민관은 출범 이후 2016년 말까지 4년 동안 총 852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해 처리하면서 시민후민관의 시민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앞서 강원도도 2012년 10월부터 시민후민관과 거의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갈등조정위원회(출범 초기 명칭은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시흥시의 시민후민관은 1명의 상근독일제로 운영되는 반면,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9명의 위원(옴부즈만의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다)은 차이점이 있다. 또 강원도의 경우 사무국장 외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이 비상근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인명번호도 도의회와 공유할 거쳐 도지사가 위촉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 강원포럼

정경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출범 이후 2016년 말까지 4년여 동안 총 4,178건의 민원을 처리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이 같은 실적으로 2013년 국민신문고대상(옴부즈만 분야) 수상에 이어 2014년에는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을 정도로 위상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 평창 AOA 총회 개최 의미

(AOA)옴부즈만협회

속초시를 시작으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통해 강원도 전체로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 지역 옴부즈만 가운데 유독 강원도의 시흥시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이날 두 곳의 옴부즈만은 단지 지역 차원에서 활동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활동으로 연대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세계옴부즈만협회(OD) 총회에서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국내 지역 옴부즈만으로 유일하게 정회원 자격을, 시흥시 시민후민관은 순회

2017년 05월 12일  
10면 1면 상단

원 자격을 획득한 바 있다. OD는 전 세계 옴부즈만 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1978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현재 111개국 185개 기관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오는 6월 16~19일 4일간 평창 알펜시아에서 제15차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총회를 개최한다.

'아시아 옴부즈만의 발전과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AOA 총회는 국가 옴부즈만(국민권익위원회)과 지역 옴부즈만(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이 공동으로

유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강원도는 이미 2015년 11월에 국내

지방정부로는 최초로 AOA 정회원으로 가입했으며, 이번 평창 AOA 총회에는 아시아 25개국의 옴부즈만과 실무자, 국내 지역 옴부즈만과 유관기관 등 400여명이 참여해 대담한 활동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평창통계를림피크와 강원도 홍보를 겸해 열리는 이번 AOA 총회는 전 세계 옴부즈만과의 연대 및 경험 공유를 통해 강원도민들에게도 보다 나은 높은 서비스 제공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7-6-1780m)



제15차 아시아오부즈만협회 총회 개최  
2017. 05. 평창군



2017 평창 글로벌 옴부즈만 컨퍼런스 개최  
2017. 06. 평창군

2018년





강원도형 이동신문고 운영  
2018. 10. 화천군



고충민원해결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특강  
2018. 12.

2019년

**江原日報** 2019년 06월 18일 (화) 인문 21면

**김원동도 사회갈등조정위원장 선출**

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신입 위원장에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사진)가 선출됐다.

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위원간 호선을 통해 김 교수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17일부터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게 되며 임기는 2년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춘천사회혁신파크 운영 민간협의회 위원장, 강원 지방노동위원회 공약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역사회학회 회장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갈등관리 분야 위원 등을 역임했다. **최기영기자**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김원동 위원장 선출 2019. 06.



권익위원회 연계 '지역형 이동신문고' 2019. 04. 정선군



강원도형 이동신문고 운영 2019. 10. 속초시



강원도 민원담당 공무원 대상 고충민원 처리 역량강화 교육  
2019. 09. 강릉시



근로복지공단(춘천지사)과 업무협약  
2019. 10.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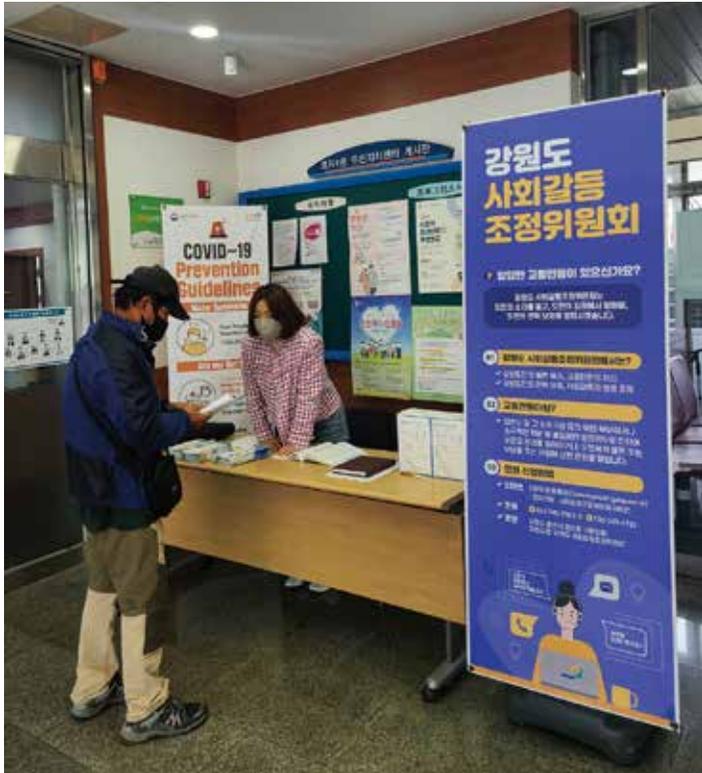


차량 활용 비대면 위원회 홍보  
2020. 06. 춘천시



권익위원회 주관 이동신문고 합동상담  
2020. 08. 태백시

2021년



도 자체 취약계층 '맞춤형 이동신문고'  
2021. 05. 춘천시



도 자체 취약계층 '맞춤형 이동신문고'  
2021. 05. 춘천시



강원도 주민자치회와 업무협약 체결  
2021. 10.



권익위원회 연계 '지역형 이동신문고' 운영  
2021. 11. 철원군

(참고2) 연간 운영상황 보고서 발간(2013~2020)





## 제4장

# 주요 고충 민원처리 사례



- I. 강원도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한 민원
- II. 의료원 직장상사의 부적절한 언행 조치 미흡
- III. 교차로 구간 도로 연결허가에 대한 고충

## 2021년 고충민원 처리사례

연번	주요내용	관계기관 소관부서	처리결과
1	강원도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한 민원	강원도(○○○○원)	기각, 의견표명
2	의료원 직장상사의 부적절한 언행 조치 미흡	강원도○○의료원	의견표명,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3	교차로 구간 도로 연결허가에 대한 고충	강원도○○○○사업소	기각

## I. 강원도 〇〇〇〇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한 민원

- 본 민원은 강원도 〇〇〇〇원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에 응시하였으나 탈락한 신청인이 본인이 합격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추가 채용 요구, 응시자 거주지 지역제한을 기존 '강원도' 에서 '춘천시 〇〇읍' 으로 변경하고 근무기간 상한제를 신설할 것을 주장한 민원
- 피신청기관이 적법 절차에 따라 공개채용으로 합격자를 선발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불합격 사유에 대한 설명 및 추가 채용, 응시자 거주지 제한 및 근무기간 상한제 실시에 대해서는 '기각' 하되, 채용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 평정요소를 재정비하고 면접위원 구성의 관계기관 외 외부위원 구성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의견표명' 한 사례

### 결정개요

1. 민원표시 : 제〇〇〇호, 강원도 〇〇〇〇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한 민원
2. 신청인 : 〇〇〇 (강원도 〇〇읍)
3. 피신청인 : 강원도(〇〇〇〇원)
4. 결정사항 : 기각, 의견표명
5. 결정일자 : 2021. 4. 23

### 이유

#### 1. 신청원인

- 가. 신청인은 강원도 〇〇〇〇원에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제근로자로 매년 채용되어 근무해오나, 2021년도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에 응시하였으나 객관적 근거 없이 면접전형에서 탈락하여 최종 합격자로 선발되지 못함

- 다. 해당 자격요건은 '신체 건강한 자로 나이제한이 없으며 경력자 우선 선발' 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합격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추가 채용을 요구함
- 라. 또한 응시자 거주지 지역제한을 현행 '강원도' 에서 실제 근무 장소인 '춘천시 ○○읍' 으로 변경하고, 근무기간 상한제를 신설할 것을 주장하며 우리 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함

## 2. 피신청인(강원도 ○○○○원) 주장

○○○○원 ○○○○과 ○○○○실에서는 「강원도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에 명시된 채용계획 수립, 채용절차, 근로계약의 체결 및 복무관리를 하고 있음

### 가. 불합격 사유

-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심사는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평가(3인 심사위원 평균점수)를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며, ○○○○실 포장인부에 응시한 20명 전원 서류심사에 합격하였고, 신청인은 2차 면접평가 배점기준인 해당 분야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능력, 태도 등의 종합평가에서 총 평가점수 80.7점으로 최종합격자 수 11명 안에 들지 못하였기에 최종 탈락한 것으로 확인됨

### 나. 채용 요구

- 「강원도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 제14조(공정채용) 제2항 '소속부서의 장은 인사지원서,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 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번 채용과정에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공고를 통해 최종 합격한 자 외에 추가적으로 특정인을 임의 채용하는 것은 규정 및 해당 절차에 맞지 않다고 판단됨
- 향후 채용부서의 사용자 상황 변동, 조직개편, 예산 확충 변화 등에 따라 추가 채용 공고가 있을 수 있으나, 동일한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사전심사, 공고, 채용과정 등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하게 되므로 특정인의 채용 보장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다. 응시자 거주지 제한

- 2021년도 ○○○○과 1차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자격요건 항목 가항에는 ‘신체 건강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 강원도 거주자로, 근로 장소까지 출퇴근이 가능한 자’ 로 명시되어 있고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강원도민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거주지 제한규정만을 두고 있음
- 또한, 「강원도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 제14조(공정채용)제3항에서 ‘소속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요한 채용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으나, ‘춘천시 ○○읍’ 으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은 과수연구포장 관리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강원도민의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을 위해서 현재의 거주지 제한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 실제로 2021년 ○○○○과 ○○○○실 기간제근로자(포장인부) 응시자 20명 중 ○○읍 거주자는 8명으로 전체 채용인원 11명에 미달하는 수준이며, 따라서 ○○읍으로 거주지 제한 시 연구업무 수행에 필요한 양질의 인력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라. 근무기간 제한(상한제)

- 「강원도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 제18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 이외에 다른 채용 관련 연령제한은 없으나, 과수연구실 업무의 성격(고강도 노동 및 시험조사 보조 업무 등의 포함)과 관련하여, 노약자가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채용공고상에 ‘신체 건강한 자’ 로 자격요건을 제한하고 있으며, 채용심사 시 업무수행 능력 등을 포함한 10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한 상대평가를 수행하여 순위에 따른 채용을 하게 되므로, 별도의 고령자의 근무기간 상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3. 사실 관계

#### 가. '21.02.16. ~ 02.23. 2021년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1차)

- 모집인원 : 0000실(포장인부), 0000실(연구보조3급, 포장인부), 0000실(연구보조 2·3급)

#### 나. '21.02.22. ~ 02.23. 응시원서 접수

#### 다. '21.02.24. 서류심사 결과발표

- 0000실 포장인부로 1차 서류심사 합격

#### 라. '21.02.26. 최종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에 탈락하여 최종 불합격

《 강원도0000원 공고 제2021-0호(발체) 》

①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 지역제한 : **신체 건강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 강원도 거주자로서 근로 장소까지 출·퇴근이 가능한 자

② 자격기준

- 포장인부 : **18세 이상**, 농작업, 과원관리, 생육조사 및 분석업무 보조 등의 업무 가능자, **경력자** 우선선발

③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및 서류심사)

- 제2차 시험 : 면접

### 4. 판단

#### 가. 불합격 사유 및 추가 채용

-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같은 채용방법을 준용하여 시행한 것으로 면접전형 평가점수에 따라 최종 탈락자가 발생하였으며 신청인 또한 평가점수 외의 다른 특별한 탈락사유 없음
-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공개경쟁 방식으로 신규 채용의 절차를 거침에 따라 기존 근로자가 당연 선발되는 것이 아니므로(고득점 순)
-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 절차를 거친 최종 합격자 외 특정인을 추가로 채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나. 응시자 거주지 제한 및 근무기간 상한제

- 「강원도 공무원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 제14조(공정채용) 제3항에 따라 채용권자가 자격기준을 정한 것으로써 실제로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는 농작업, 과원관리, 생육조사 및 분석업무보조 등으로 거주지 지역제한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 근무기간 상한제 역시 채용권자가 자격기준을 정한 것으로써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 《 강원도 공무원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 》

**제14조(공정채용)** ③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원직 등이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요한 채용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제1항제4호에 따라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항제1호의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장기고용이 가능함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 동법률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 다. 신청인의 요구사항과 피신청인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기간제근로자는 연구업무 특성상 매년 새로운 근로계약을 설정하고 2~6개월의 단절기간이 존재하므로 갱신 기대권을 가지지 않으나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하여 채용공고문 근로기간 항목에 문구를 추가하여 표기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임용시험의 방법)제3항에 따라 면접시험 평정요소가 결정되었으나 기간제근로자(포장인부)의 주된 업무는 제조작업, 순자르기, 봉지 씌우기, 수확 등의 단순작업이고 연구업무 내용에 따라 라벨을 표시하거나 개수·크기를 세는 업무임

- 이를 평가하기 위한 면접평가 평정요소 중 ‘전문지식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배점이 10점으로 단순 작업이 주 업무인 포장인부를 평가하기에 부적합한 요소로 판단됨
- 경력자 우선선발에 대한 평정요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면접 평가표에 경력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 종합적으로 면접 평정요소를 재정비하여 업무특성을 고려한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검증 확인이 필요함
- 또한 면접위원 구성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 외 외부위원을 두어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지만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당사자 점수 확인을 가능하게 하여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사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적합한 요소로 판단됨

## 5. 결론

- 가. 본 민원은 적법 절차에 따른 공개채용으로 합격자 선발이 이루어졌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불합격 사유 및 추가 채용, 응시자 거주지 제한 및 근무기간 상한제에 대해서는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7항에 따라 “기각” 하며,
- 나. 강원도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 평정요소(경력자 우선 선발, 전문지식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재정비하고 면접위원 구성의 관계기관 외 외부위원 구성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의견표명” 하고자 함

## II. ○○의료원 직장상사의 부적절한 언행 조치 미흡

- 본 민원은 ○○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신청인이 자신에 대한 직장 상사(박○○)의 모욕적인 언행을 전해 듣고 해당 의료원의 고충처리위원회에 본 사항을 1차 신고하였고, 박○○이 신청인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신청인 입장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이지 못하여 2차 신고하였고 위원회에서 기각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민원접수를 한 사항임.
- 또한 강원도에서 ○○의료원에 교부한 보조금과 관련, 지원대상이 아닌 박○○에게 부당수령 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아 재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으로 판단되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고충민원 사항을 다시 검토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의견표명을 하였으며, 보조금 대상자가 아닌 박○○이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주장 또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시정권고 및 향후 보조금 부당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권고를 한 사례임.

### 결정개요

1. 민원표시 : 제○○○호, ○○의료원 직장상사의 부적절한 언행 조치 미흡
2. 신청인 : ○○○ (강원도 ○○시)
3. 피신청인 : 강원도○○의료원
4. 결정사항 : 의견표명,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5. 결정일자 : 2021.11.19

### 이유

#### 1. 신청원인

- 가. ○○의료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청인은 '21. 8. 10. 본인의 상관인 ○○과장 박○○이 자신에게 시정 잡배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다.

- 나.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고충처리위원회에 본 사항을 신고하였고, '21. 8. 11. 위원회에서는 ○○과장 박○○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사과하라고 권고하였다.
- 다. '21. 8. 20. ○○과장 박○○이 신청인에게 사과를 하였으나 신청인은 진정성이 있는 사과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의 고충위원회에 2차 신고하였으나 위원회에서는 이를 기각하였다.
- 라. 또한 강원도에서 속초의료원에 교부한 보조금(위로금)과 관련, 당초 지원대상이 아닌 ○○과장 박○○에게 부당 수령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 2. 사실관계

- 가. ○○과장 박○○이 시정잡배라는 단어를 신청인에게 사용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상담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나. 피신청인이 부적절하게 사용한 예산은 강원도 ○○과에서 교부한 지원금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수당 지급 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의료원에 집행내역을 보고하도록 통보하였다.

## 3. 피신청인의 주장

- 가. 고충처리위원회 결과에 따라 ○○과장 박○○이 '공개사과' 를 하도록 하였으나 신청인은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고, 보조금 부당 지급과 관련하여 ○○과장 박○○의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과 실수로 본인을 포함해 대상자가 아닌 직원까지 선정하였으나 현재 환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 4. 판단

### 가. 관계 법령 등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의료원 복무규정」

**제46조 (징계사유)** ①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법률, 조례 및 정관·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의료원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병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병원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4.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 하는 경우
5. 연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할 경우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임·직원이 이 정관에 따른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임·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정관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사유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내 괴롭힘이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직원은 다른 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0조 (당사자 간 해결)** 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그 행위의 중단을 위하여 행위자와 분리되기만을 요구하는 경우, 원장에게 보고하여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 질 수 있도록 한다.

②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행위자의 괴롭힘 행위 중단 및 사과 등 직접적인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요구안을 정리하여 행위자에게 전달하여 합의를 진행한다.

**제61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조치)** ① 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등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나. ○○과장 박○○이 신청인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라는 점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2021. 8. 직장상사인 ○○과장 박○○의 시정잡배라는 단어 사용으로 힘들어하며 속초의료원 고충처리위원회에 상담을 신청하였고, ○○과장 박○○이 잘못을 인정하였음에도 신청인이 판단하는 진정성 있는 사과 없이

중결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판단하는 진정성이 있는 사과의 기준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의료원 복무규정」 제60조 제2항에 따른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보일 수도 있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및 「○○의료원 복무규정」 제61조에 따라 피신청인의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하고 조속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강원도에서 ○○의료원으로 교부한 예산이 지급대상이 아닌 ○○과장 박○○에게 지급되었다는 신청인의 의혹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교부기관의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음압치료병상에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실근무한 인력에게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와 관련이 없는 직원들에게 지급하였다. 다만, 현재 교부기관에서 수당 지급 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통보하였고 피신청인은 이에 적절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 음압치료병상에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실근무한 인력이 아님에도 본인을 지급대상자로 판단하고 수령한 ○○과장 박○○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 부분이 지급기준에 대한 이해부족과 실수로 지급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는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한 것으로 보이며, 환수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상응하는 벌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의료원 복무규정」 제46조에 따른 징계하는 등 신청인의 적절한 조치를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5. 결론

가. 그러므로 ○○과장 박○○이 신청인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사과를 하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재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할 것이며, 피신청인의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신청인의 고충민원 사항을 다시 검토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2호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 표명’ 하기로 한다.

나. 보조금 대상자가 아닌 ○○과장 박○○이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할 것이며, 피신청인이 복무규정에 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1호에 따라 ‘시정권고’ 하기로 한다.

다. 또한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교부조건 숙지 및 관리감독 등을 철저히 하여 부당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3호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 개선 권고’ 하기로 한다.

### III. 교차로 구간 도로 연결허가에 대한 고충

- 본 민원은 ○○군 ○○면에 농지, 주택, 축사를 구입해 경영하던 신청인이 건축물 지붕(슬레이트)1급 발암물질로 인해 개축을 할 수 없어, 주택과 축사를 철거한 후 신축을 추진하던 중 기존 사용하던 진입로가 교차로 구간이라 도로의 연결허가가 금지구간이 된 사실을 알게 되어 민원을 신청한 사례임
- 신청인이 도로연결 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점은 부지 인근에 골프장 진입도로가 신설되면서 형성된 교차로와 접도구역 등으로 인해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으로, 이전에 허가받은 내역 확인 등 해당구간을 진입로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하기에 해당 민원사항을 '기각' 한 사례

#### 결정개요

1. 민원표시 : 제○○○호, 교차로 구간 도로 연결허가에 대한 고충
2. 신청인 : ○○○ (강원도 ○○군)
3. 피신청인 : 강원도 ○○○○사업소
4. 결정사항 : 기각
5. 결정일자 : 2021. 12. 20

#### 이유

##### 1. 신청원인

가. 신청인은 1990년부터 ○○군 ○○면 ○○리 ○○○-○, ○○○-○번지 농지, 주택 및 축사를 구입하여 경영하던 중 건축물의 지붕(슬레이트)이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개축할 수 없게 되었다.

- 나. 이에 2017년 주택과 축사를 철거한 후 신축을 위해 ○○군에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문의를 하던 중 해당 구간이 교차로 구간이라 도로의 연결허가가 금지구간이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 다. 신청인은 인근 골프장 진입도로가 신설되면서 형성된 교차로와 접도구역 등으로 인해 도로 연결허가 금지구간이 발생한 것으로, 기존부터 사용하던 진입로라는 점을 고려할 때 허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워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 2. 피신청인의 주장

- 가. 「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청인이 도로연결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점은 별표4에 해당하는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이다.
- 나.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로 인해 허가가 어려워진 신청인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으나 진입도로 인정할 수 있는 이전 허가 내용 등 입증할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 참고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군 ○○면 ○○리 ○○○-○, ○○○-○ 주변에 터널 사업을 위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 3. 사실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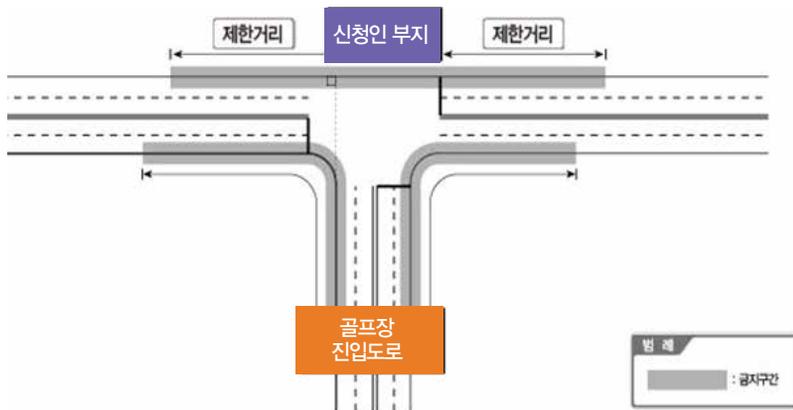
가. 「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별표4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제6조제3호 관련)**

1.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계획이 없는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연결 금지구간은 도로가 교차하는 물리적인 영역과 제한거리로 한다.
  - 나. 제한거리는 감속차선의 경우 차량의 정지선에서부터 산정하고, 가속차선의 경우 교차하는 도로의 연장선과 만나는 지점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그 밖의 지역
50	25	40
60	40	60
70	60	85
80	70	100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계획이 없는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나. 골프장 진입도로는 강원도고시 제○○○○-○○○호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시설) 결정(변경) 고시에 따라 신설하였다.

다. 골프장 진입도로를 신설하기 이전 신청인이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에게 없다.

라. ○○군 ○○면 ○○리 ○○○-○, ○○○-○ 주변은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 및 실시 설계 진행 중인 「국지도○○호선 ○○-○○ 도로건설공사」 구간으로, 해당 청에서는 '22. 5월 중에 설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편입 용지도 등은 확정되지 않아 도면 등의 공개가 어려운 상황이다.

#### 4. 판단 및 결론

도로 연결허가를 위한 신청인의 주장은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상 타당하지 않으므로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7호에 따라 민원 사항을 '기각' 하기로 한다.

#### 현장사진



제5장

참고  
자료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 총무행정관

(제정) 2012-08-03 조례 제 3573호

(전부개정) 2015-10-08 조례 제 3885호

(일부개정) 2017-12-29 조례 제 4235호 (성별균형을 위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8-04-13 조례 제 4260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에 따라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 및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다수인민원, 사회갈등 등의 신속·공정한 조정 또는 해결을 통해 주민의 기본적 권익과 신뢰를 보호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다수인민원”이란 다섯 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고충민원을 말한다.
3. “사회갈등”이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의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4. “신청인”이란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사무국”이란 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사·권고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6.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도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 제2장 위원회 기능·구성 등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충민원, 다수인민원, 사회갈등 등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권고,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 처리
2. 주민이 신청한 민원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처리
3.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강원도의회(이하 “도의회”이라 한다)가 고충민원, 다수인민원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와 처리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또는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평가
5. 민원사항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교육홍보
7.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 구제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8.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4조(관할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1. 도 분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
2. 도에서 시·군에 위임한 사무의 경우 시·군 분청 및 소속행정기관
3. 도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4. 도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또는 출연기관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나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2.29.>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의 자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지방행정과 법률 등에 관하여 뛰어난 식견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7조(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8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와 다르게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1조 제1항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경우
  3.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4.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 ③ 위원이 제2항 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해촉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1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결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복합된 내용의 경우에는 사안별로 달리할 수 있다.

1. 시정권고 : 피신청인(대상기관)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변경·개선하거나 이행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

2. 의견표명 : 피신청인(대상기관)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도개선 권고 : 법령 이외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도개선 의견표명 : 법령 이외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합의 권고 :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

6. 조정 :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기각 : 신청인의 요구가 타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8. 각하 : 고충민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9. 이첩 : 다른 기관 및 관련부서에 이첩하는 경우

10. 심의안내 : 다른 절차 및 제도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는 경우

**제13조(전문가 자문)**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사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위원회는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도지사과 도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과 도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3장 사무국 구성 및 운영

**제16조(사무국)**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위원회 위원이 겸직할 수 없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4.13.>

③ 도지사는 관련 근무 경력 및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사무국장을 임명한다. [신설 2018.4.13.]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 소속 공무원의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3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

⑤ 고충민원의 전문적 조사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조사관을 둘 수 있다. [종전 제4항에서 제5항으로 이동]

⑥ 도지사는 제3항 및 4항에 따른 근무자에 대하여 인사·처우 등에 우대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종전 제5항에서 제6항으로 이동]

**제17조(운영지원)** 도지사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규정)**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573호, 2012.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5호, 2015. 10.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강원도 고 충처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종전의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성별균형을 위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4235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60호, 2018.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소관부서 : 총무행정관

(제정) 2012-10-12 규칙 제 2904호

(전부개정) 2013-01-18 규칙 제 2909호

(일부개정) 2015-11-13 규칙 제 3015호

(일부개정) 2017-09-29 규칙 제 3085호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일부개정) 2019-01-04 규칙 제 3127호

(일부개정) 2019-07-26 규칙 제 3141호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정한 “고충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신설, 2015.11.13]

1.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신설, 2015.11.13]
2.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행정 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 요청 [신설, 2015.11.13]
3.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신설, 2015.11.13]
4.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 [신설, 2015.11.13]

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회갈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5.11.13]

1. 다수인이 관련된 사안 중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공익 또는 도정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안 [신설, 2015.11.13]

1. 다수인이 관련된 사안 중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공익 또는 도정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안 [신설, 2015.11.13]
2. 다수의 행정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련된 사안으로서 이해관계나 처리절차가 복잡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한 사안 [신설, 2015.11.13]
3.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신청인의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큰 사안 [신설, 2015.11.13]

**제3조(임기만료 또는 결원 위원 위촉)** ①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어 결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임자를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11.13]

1. 임기만료 및 결원 위원의 수가 위원회 위원 정수의 4분의 1 미만인 경우 [신설, 2015.11.13]
2. 결원이 된 위원의 남은 임기가 만료일까지 1년 미만인 경우 [신설, 2015.11.13]
- ②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임기 만료 또는 결원된 때에는 그 위원 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3.]

## 제2장 민원의 접수·조사

**제4조(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재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에 조례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관할 대상(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에 관한 고충민원, 다수인민원, 사회갈등조정(이하 "민원"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 ② 제1항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방문·우편·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2019.7.26.>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술로 민원을 신청하는 때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무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 ④ 위원회는 필요시 신청서의 보완을 문서·구술·전화·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 등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6.>
- ⑤ 위원회는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주민이 신청한 민원과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의뢰받은 민원(이하 "접수된 민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 접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원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민원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제출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5조(신청의 대리 등)** ① 민원의 신청은 법정대리인 이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개정, 2015.11.13.]

5.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② 집단민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대표자 선정통지서를 제출받아 접수할 수 있다.

**제6조(민원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서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해당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 등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민원을 각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 방법을 안내하거나 해당 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③ 관련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민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7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제5조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과 대표자를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8조(관련기관 이첩 등)** ①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중에서 관련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은 관련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 받은 관련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련기관의 장이 접수한 민원 중에서 세 개 이상의 부서가 관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로 이첩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민원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 받은 날을 민원 접수일로 본다. [개정, 2015.11.13.]

③ 위원회와 관련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④ 신청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위원회와 시·군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신청한 경우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신청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9조(민원의 조사)** ① 위원회는 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조사위원을 지정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② 위원회가 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사통보서를 신청인 및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10조(조사기간)** ① 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 등에게 지체 없이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회갈등 조정의 경우 사안에 따라 제1항의 조사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추진상황을 위원회에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3]

**제11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련기관 등에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개정, 2015.11.13.]

2. 신청인, 이해관계인,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현지조사

4. 감정의뢰

②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하 “조사위원 등”이라 한다)이 조사를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신청인, 이해관계인, 관련기관의 장 등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 등은 조사받는 사람에게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과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고 방문·서면(공문 포함)·구술·녹취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⑤ 조사위원 등은 피조사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조사자나 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여성 조사위원이 조사를 하고, 미성년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에는 대리인의 입회하에 조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19.1.4.>

⑥ 위원회 위원장은 집단사위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질서유지와 위원회 위원 및 직원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조사의 중지 등)** ① 위원회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지·중단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11.13]

3. 그 밖에 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11.13]

② 제1항의 경우 관련기관과 신청인에게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반복 민원 등의 처리)** ① 위원회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의 처리결과를 2회 이상 통지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신청한 때에는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종결처리 하고, 다른 사람의 경우 이미 처리한 내용의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② 위원회는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민원은 종결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제14조(합의)** ①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를 마친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②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자발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위원회가 이를 확인한다.

**제15조(조정)** ① 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정을 위한 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한다. [개정, 2015.11.13]

③ 위원회는 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민원의 신청인, 관련기관의 직원,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④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결과와 보고 등)** ① 조사위원 등이 민원의 조사를 종료한 때(제12조의 중지 등을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② 위원장은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부의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첩 등의 방법으로 종결처리한 후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1.13]

## 제3장 위원회 운영 및 관리

**제17조(위원의 기피·회피)**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견 전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그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11.13]

② 제1항에 의하여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피사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18조(위원회 회의소집)**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그 소집을 통지하되, 일시·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표기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② 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가 어려운 긴급한 회의의 경우에는 전화·구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위원회 의결사항 등)** ① 위원회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2조에 따른 결정사항 <개정 2015.11.13., 2019.1.4.>
  2. 제27조에 따른 재심의 결정사항
  3.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상호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4. 위원회 소관 시행세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5.11.13.>
  6. 그 밖에 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연간 운영계획
  2. 위원의 위·해촉 사항
  3. 위원회 관련 조례·규칙의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4. 조례 제14조에 규정된 위원회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개정, 2015.11.13]
  5. 민원 접수·처리과정에서 각하 또는 이첩한 사항 [개정, 2015.11.13]
  6. 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화해, 조정의 성립 등 중요사항 [개정, 2015.11.13]
  7. 위원회가 의결한 민원의 사후 처리결과 [개정, 2015.11.13]
  8. 민원처리 실태조사 및 자체평가 계획 및 결과 [개정, 2015.11.13]
  9. 그 밖에 위원회에 보고가 필요한 사항

**제20조(의안 작성·배부 등)** ① 사무국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개최일 4일 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1.13]

② 사무국장은 의안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으로 진행한다.

- ② 의안의 제안 설명은 사무국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한 위원 및 직원이 보충 설명할 수 있다.
- ③ <삭제, 2015.11.13.>
- ④ <삭제, 2015.11.13.>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진행에 필요한 간사의 사무는 사무국장이 수행하되,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의견청취 및 출석통지)**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기관의 공무원·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 ② 제1항의 경우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2019.1.4.>
- ③ 제1항에 따라 출석하여 진술하는 참고인(공무원, 신청인,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는 교통비·식비·숙박료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1.4.>
-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참고인 비용청구서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4.>

**제23조(의결서 작성)** ① 위원회는 의결내용이 시정권고, 의견표명, 기각, 각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하고, 제도개선 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으로 의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5.11.13.]

- ②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결서의 경정)** ①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의결서 작성 이후 명백히 잘못된 계산·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 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결서 경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경정된 의결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결서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회의록의 작성)**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회의의 일시·장소 및 공개 여부
2. 참석위원 및 배석자
3.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26조(결정의 통지)** ① 위원회는 의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민원의 결정내용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신청인과 관련기관의 장 등 관계인에게 의결서를 첨부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터넷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정·통지 전에 관련기관의 장에게 권고의 이행, 제도개선 등 처리에 필요한 기간 등의 의견을 사전에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1.13., 2019.1.4.>
- ③ 제1항의 조치를 받은 관련기관의 장 등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 또는 처리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재심의)** ① 제26조에 따라 위원회의 통지를 받은 관련기관의 장, 신청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1. 위원회의 결정대로 조치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법리오해, 사실관계 등의 중요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재심의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의 장, 신청인, 그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재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③ 위원장은 제3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 위원회의에 부의하거나, 관련기관의 장, 신청인, 그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는 것으로 종결할 수 있다.

**제28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위원회는 제26조에 따라 통보한 권고 등의 이행실태를 관련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1.13.]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
4. 그 밖에 위원회가 확인·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29조(감사의 의뢰)** 위원회는 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관련기관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 제4장 사무국 운영

**제30조(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원의 안내·상담·접수 및 조사·처리 지원 [개정, 2015.11.13]
2.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 및 사후관리
3.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기록 보존
4. 민원 편람·서식 등의 비치[개정, 2015.11.13]
5.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31조(운영상황 보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상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1.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현황 [개정, 2015.11.13]
2. 위원회가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 내용
3. 관련기관의 처리결과(미처리 사유 포함) [개정, 2015.11.13.]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사무국장)**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외부인사를 사무국장으로 임명할 경우 고충민원의 처리와 사회갈등의 조정 등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청렴성·도덕성을 갖춘 사람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② 사무국장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임기제공무원 “5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책정하고, 복무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13., 2017.9.29., 2019.1.4.>

**제32조의2(전문조사관 채용)**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 및 사회갈등 조정·중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5명 이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문조사관으로 둘 수 있다. [신설, 2015.11.13]

1. 행정기관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갈등 조정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신설, 2015.11.13]
2. 변호사·건축사·기술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신설, 2015.11.13]
3. 갈등 조정 등과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15.11.13]
4. 그 밖에 갈등 조정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5.11.13]

**제33조(수당과 여비)**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 안건 심사, 민원현장 확인·조사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근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5.11.13.]

**제34조(신분증명서)** ① 위원회 위원에게는 신분증명서를 발급하고, 발급대장을 별지 제17호서식으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신분증명서를 분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받아 재발급할 수 있으며, 위원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 제5장 보칙

**제35조(위원회 사무의 전결)** 위원회의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전결처리 할 수 있으며,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별표)와 같다.

**제36조(기록의 관리)** ① 위원회의 모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민원기록은 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② 민원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3]

1. 의결서, 조정서, 합의서 : 준영구
2. 심의·의결 관련문서 : 5년
3. 일반문서 : 3년

**제37조(정보의 공개)** 민원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등 정보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부칙 <제2904호, 2012. 10.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9호, 2013. 1.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5호, 2015.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5호, 2017.9.29.>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7호, 201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1호, 2019.7.26.>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민원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민원 접수처리부
- [별지 제3호서식] 민원접수증
- [별지 제4호서식]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대표자 선정 통지서
- [별지 제6호서식] 민원 조사통보서(공문)
- [별지 제7호서식] 민원 처리기간 연장 안내(공문)
- [별지 제8호서식] 신분증명서
- [별지 제9호서식] 합의서
- [별지 제10호서식] 조정서
- [별지 제11호서식] 민원조사결과보고
- [별지 제12호서식] 의안대장(제20조제2항 관련)
- [별지 제13호서식]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의결
- [별지 제14호서식] 위원회 의결(제23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5호서식] 민원처리결과통보
- [별지 제16호서식]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제29조 관련)
- [별지 제17호서식] 참고인 비용청구서
- [별표] 위원회 사무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제35조 관련)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1.13>

**민원접수증(제4조제5항 관련)**

접수번호		민원제목		
신청인	성명		주소	
대표자 (대리인)	성명		주소	
접수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 민원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33-249-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1.13>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 (제5조제1항 관련)**

1. 민원번호		
2. 신청인	성명(명칭)	
	주 소	
	전 화	(이동전화)
3. 대리인의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전 화	(이동전화)
4.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이유		
5. 신청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6. 대리인의 자격		
<p>「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을 선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 . .</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b>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b></p>		
비교	<p>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p> <p>2. “1. 민원번호”에는 민원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 그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셔도 됩니다.</p> <p>3. 자격입증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p>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1.13>

**대표자 선정 통지서 (제5조제2항 관련)**

1. 민원번호		
2. 신청인	성명(명칭)	
	주 소	
	전 화	(이동전화)
3. 선정된 대표자의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전 화	(이동전화)
<p>「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 . .</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b>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b></p>		
비고	<p>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p> <p>2. “1. 민원번호”에는 민원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 그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셔도 됩니다.</p>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5.11.13)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제9조제2항 관련)

수신

제목 조사통보서

1.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민원조사가 실시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조사기간	
자료제출 등 조사의 내용	

2. 이 조사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담당공무원에게 (☎ 033-249- )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인

직원

서명

사무국장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200-0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www.0000.go.kr

전화 (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11.13>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제10조제2항 관련)**

수신

제목 민원 처리기간 연장 안내

1.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민원은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접수일자		당초 처리기간	
연장사유			
처리에정기한			

2. 귀하의 민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위해서 예상보다 처리기간이 늦어지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담당공무원에게(☎ 033-249- )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인**

직원	서명	사무국장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200-0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 www.0000.go.kr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11.13>

**신분증명서(제11조제2항 관련)**

(앞면)

60mm × 90mm

**신 분 증 명 서**

제 호

성 명 :

생년월일 :

3cm × 4cm

사 진

위 사람은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촉된 강원도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강 원 도 지 사 (직인)

(뒷면)

- ◎ 우리 도에서는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우리 위원회는 행정기관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 이 증을 제시하면 강원도 소속 공무원은 물론 도민들께서도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쇄용지 : 특급 190g/m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11.13>

<b>합 의 서</b> (제14조제2항 관련)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합의일시	20 . . . . . :
합의장소	
[합의내용]	
위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20 . . . . .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대상기관)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사무국장	조사위원
담당직원	

위원장

민원조사결과보고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청인	○○○	주소	
피신청인	○○○	접수일	20 . . .

1. 신청취지
2. 피신청인의 주장
3. 사실 관계
4. 판 단
5. 결 론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의견없음
7. 법률구조여부
  - 법률구조필요     의견없음

위 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

- ※ 관계법령, 복명서, 출석조사서 등 별첨
- ※ 다수인 관련 민원인 경우 도지사에게 별도 보고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11.13>

### 의안대장 (제20조제2항 관련)

의안 번호	회의 차수	상 정 연월일	의안 구분	의 안 명	의 결 연월일	의결 결과	비고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의 결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신청인 주소)

피신청인

주 문

신청취지

이 유    별지와 같다.

20 . . . .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별 지)

이 유

1. 신청원인
2. 피신청인 등 주장
3. 사실 관계
4. 판 단
5. 결 론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5.11.13>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의결 (제23조제1항 관련)

제 목

소관기관

결정사항

이 유 별지와 같다.

20 . . . .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별 지)

이 유

1. 현 황
  2. 관계법령
  3. 문제점
  4. 개선방안
-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가. 피신청인 통지용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수신

제목 민원처리결과 통보

1.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붙임 의결서와 같이 귀 기관에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귀 기관에서는 위원회의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그 이유를 통보할 경우 다시 심의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권고내용(의견내용)은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귀기관의 처리결과와 함께 공표되거나 매년 도지사와 도의회에 보고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결서 1부. 끝.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인

주무관	서명	사무국장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200-0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www.0000.go.kr
전화 (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설 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 나. 신청인 통지용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수신

제목 민원처리결과 통보

1.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위원회의 권고를(의견을) 통보받은 피신청인(기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또는 처리계획)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3. 다만,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통보할 경우에는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결서 1부. 끝.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인

주무관	서명	사무국장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200-0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www.0000.go.kr
전화 (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개정 2015.11.13.>

사무국장	조사위원
담당직원	

위 원 장

감사의뢰 등 검토 보고(제29조 관련)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	피신청인	
감사대상 기관			
감사의뢰 사항 (위법·부당한 사실)			
참고사항			
검토결과	<p>위 감사의뢰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 .</p>		
조치의견	<input type="checkbox"/> 감사의뢰 <input type="checkbox"/> 감독기관 통보		

[별지 제17호서식]

참고인 비용청구서					
민원명				접수번호	
참고인	성명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비용	금 원 (₩ )				
구분	출발지	도착지	거리와 요금		
			종별	거리(Km)	요금
교통비					
구분	단가		일시	금액	
식비					
숙박비					
영수방법	“영수증 별첨“				
입금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위와 같이 참고인의 비용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성명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귀중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 2022. 1. 4.] [법률 제18715호, 2022. 1. 4.,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청렴정책총괄과) 044-200-7612

국민권익위원회(심사기획과) 044-200-7694

국민권익위원회(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2

국민권익위원회(민원조사기획과) 044-200-7308

국민권익위원회(법무담당관) 044-200-7057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2. 3., 2016. 3. 29., 2017. 4. 18., 2019. 4. 16., 2020. 12. 29.>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

- 마.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2.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
-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나.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다. 제1호다목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신청인”이란 이 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개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아. 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8.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9.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당의 책무)** ① 「정당법」에 따라 등록된 정당과 소속 당원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당 및 소속 당원은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하게 하고 정당운영 및 정치자금의 모집과 사용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기업의 의무)** 기업은 건전한 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일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2 삭제 <2021. 5. 18.>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공직자의 생활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그 보수와 처우의 향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권익구제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거나 사회정의와 공익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행정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①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6. 9.>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신설 2020. 6. 9.>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1. 25.>

1. 국민의 권리보호·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7.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8.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10. 부패행위 신고 안내·상담 및 접수 등
11.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12.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13.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
14.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1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지도
1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운영
1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지원 및 교육
18.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조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처리
19.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21. 그 밖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13조(위

**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부위원장 3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각각 고충민원, 부패방지 업무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업무로 분장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다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 25.>

②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고충민원과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직에 4년 이상 있었던 자
6.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상임이 아닌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 2. 17.>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 5. 28.>

⑤ 위원이 결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1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된 자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16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② 위원장과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3. 제17조에 따른 검직금지사유에 위반한 경우
  - ④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면직 또는 해촉한다.

**제17조(위원의 검직금지 등)**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 4. 1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④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제25조에 따른 파견 공무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 및 제22조에 따른 전문위원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 4. 16.>

**제19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4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제18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1. 4.>

1. 제46조에 따른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 중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47조에 따른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사항
  3. 제51조제1항에 따른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5.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②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그 밖에 소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전문위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학계, 사회단체 그 밖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3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겸직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①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사·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 내의 내부규정

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2.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 명령을 포함한다)의 당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③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제12조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그쳐야 하며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실태조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도의 개선 등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 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0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삭제** <2019. 4. 16.>

## 제3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 ④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34조(활동비 지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32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5조 및 제83조의2제1항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9. 4. 16.>

**제36조(사무기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37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특별 보고를 할 수 있다.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4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39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권익위원회에 대하여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 · 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자로서 권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④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서류를 보류 · 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동일한 고충민원의 상호 통보)** 신청인이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동일한 고충민원을 둘 이상의 권익위원회에 각각 신청한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제43조에 따라 이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4. 16.]

**제41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권익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 ③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지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조사의 방법)** ① 권익위원회는 제41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 ② 권익위원회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익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3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④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이송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권익위원회에 그 고충민원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6.>

⑤ 권익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송한 고충민원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충민원이 이송된 때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4. 16.>

[제목개정 2019. 4. 16.]

**제44조(합의의 권고)** 권익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5조(조정)** ① 권익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권익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8. 4. 17.>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은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48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하기 전에 그 행정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 4. 16.>

②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권익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9조(결정의 통지)**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처리결과와 통보 등)** ①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권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감사의 의뢰)** ①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원회는 감사원 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② 감사원, 관계 행정기관등의 감독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의뢰받은 경우 그 처리결과를 감사를 의뢰한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4.>

**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53조(공표)** 권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2. 제50조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3. 제50조제2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불이행사유

**제54조(권익위원회 상호간의 관계)** ① 위원회 또는 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이하 이 장에서 “신고”라 한다)를 한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자”라 한다)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19. 4. 16.>

**제57조의2(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58조(신고의 방법)**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 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제5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58조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8조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기명의 문서는 변호사의 인적사항 및 변호사 이름의 문서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신고자 또는 신고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 1. 4.]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
2. 신고내용이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위원회가 정하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이 제3항에 따른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신설 2022. 1. 4.>

⑤ 위원회는 신고자를 상대로 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7., 2022. 1. 4.>

⑥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 수사처,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19. 4. 16., 2020. 12. 29., 2021. 8. 17., 2022. 1. 4.>

1.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2.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3.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4. 법관 및 검사

5. 장성급(將星級) 장교

6. 국회의원

⑦ 관할 수사기관은 제6항에 따른 고발에 대한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29., 2021. 8. 17., 2022. 1. 4.>

⑧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2021. 8. 17., 2022. 1. 4.>

⑨ 위원회는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9. 4. 16., 2021. 8. 17., 2022. 1. 4.>

[제목개정 2022. 1. 4.]

**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4.>

② 제5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조사기관(조사기관이 이첩받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받은 조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2022. 1. 4.>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즉시 신고자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기관에 대하여 통보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④ 신고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위원회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1. 4.>

- ⑤ 위원회는 제59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 ⑥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4.>

- 제61조(재정신청)** ① 위원회는 제59조제6항에 따른 혐의대상자의 부패혐의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에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 그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2020. 12. 29., 2021. 8. 17., 2022. 1. 4.>
-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4, 제264조 및 제264조의2를 적용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에 따른 검사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에 그 통보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 4.>
1. 검사가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 1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날
  2. 위원회가 제59조제6항에 따라 고발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날

- 제61조의2(이의신청)** 제59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위원회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2022. 1. 4.>
- [본조신설 2020. 12. 29.]

-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9. 4. 16.]

- 제62조의2(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등)** ① 신고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신분보장등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1년 이내에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

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은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고,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분보장신청인”이라 한다)과 그가 소속된 기관·단체·기업 등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기업 등의 장(이하 “소속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이 불이익조치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등에게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1.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
  2. 신고자 또는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3. 각하결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의 권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를 받은 경우
  5. 제5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로서 신분보장등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각하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자료의 제출, 사실·정보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요구를 받은 자는 성실히 따라야 한다.

1. 신분보장신청인
  2.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참고인
  4. 관계 기관·단체·기업 등
- ⑤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소속기관장등에게 충분한 소명(疏明)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종전 제62조의2는 제62조의5로 이동 <2019. 4. 16.>]

**제62조의3(신분보장 등의 조치 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 제7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신분보장 등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이 경우 보수 등의 지급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4. 전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②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제2조제7호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거

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가·허가 또는 계약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신분보장등조치를 할 것을 권고(이하 “신분보장등조치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공직자인 신분보장신청인이 위원회에 전직, 전출·전입 및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인사혁신처장 등 인사조치 요청과 관계된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받은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신분보장등조치권고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분보장신청인과 소속기관장등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62조의4(행정소송의 제기 등)** ① 소속기관장등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등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62조의5(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분보장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 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 1.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 2.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행하여졌고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4. 16.>

[본조신설 2016. 3. 29.]

[제목개정 2019. 4. 16.]

[제62조의2에서 이동 <2019. 4. 16.>]

**제62조의6(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등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조치결정”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으로, “보호조치”는 “신분보장등조치”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소속기관장등”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63조(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신고한 뒤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 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9. 4. 16.>

**제63조의2(화해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신분보장등조치 권고 또는 기각결정을 하기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신분보장등조치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 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 권고나 화해안에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거나 이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해안의 작성, 화해조서의 작성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10. 31.]

**제64조의2(신변보호조치)** ①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③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 10. 31.]

**제65조(협조자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0. 31., 2019. 4. 16.>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② 공공기관의 장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③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 1. 4.>

④ 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4. 16., 2022. 1. 4.>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자의 범죄행위에 관한 형사재판 또는 신고등으로 인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과 관련된 소송에 대하여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2. 1. 4.>

**제66조의2(협조의 요청)** 위원회는 신고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신분보장등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밖의 단체 등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67조(준용규정)**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2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제58조의2는 제3호의 경우에만 준용 하되, 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 3. 29., 2017. 10. 31., 2019. 4. 16., 2022. 1. 4.>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2.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3.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4.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포상 추천 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9. 4. 16.>

②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③ 신고자 및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2022. 1. 4.>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2022. 1. 4.>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1. 4.>

⑥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 4. 16., 2022. 1. 4.>

⑦ 제3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과 관련된 조사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 및 협조자”로 본다. <신설 2019. 4. 16., 2022. 1. 4.>

[제목개정 2019. 4. 16.]

**제69조(보상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 4. 16.>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 4. 16.>

1.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③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9. 4. 16.>

④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며, 그 밖의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9. 4. 16.>

1. 위원회 소속으로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회계·감정평가,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16.>

**제70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0조의2(보상금 등의 상환 및 환수)** ① 위원회는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제2조 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을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받은 사람은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제68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았으나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3. 제6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지급받은 구조금이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4. 제7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상금등이 지급된 경우
5. 그 밖에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환 또는 반환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목개정 2022. 1. 4.]

**제71조(보상금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등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6., 2022. 1. 4.>

② 위원회는 제6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포상금·보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보상금 등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보상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포상금·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보상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포상금·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4.>

③ 위원회는 제68조제3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구조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 그 구조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구조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4.>

④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보상금 등을 지급할 기관은 포상금·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포상금·보상금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보상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보상금 등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보상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보상금 등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포상금·보상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4.>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기관은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 그 구조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구조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4.>

[제목개정 2022. 1. 4.]

## 제6장 국민감사청구

**제72조(감사청구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이하 “당해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7., 2022. 1.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2.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21. 1. 12.>

**제73조(감사청구의 방법)**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감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74조(감사실시의 결정)** ①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국민감사 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감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기각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5조(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①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가 종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6조(운영)**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민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장 보칙

**제77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하거나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법률 또는 조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제78조(고충민원사무의 정보보호)**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등은 고충민원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9조(고충민원 신청사항의 게시 등)**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고충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편람을 비치하는 등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또는 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담당직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는 등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0조(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1조(교육과 홍보 등)**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권리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학교에서 고충민원의 처리와 권리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교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공무원의 교육훈련과정에 고충민원 제도 및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81조의2(공직자 부패방지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은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4.>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도교육청평가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방법, 결과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4.>

[본조신설 2016. 3. 29.]

**제81조의3(국민권익 향상에 관한 포상)**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권익 보호·향상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3. 29., 2022. 1. 4.>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로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신설 2016. 3. 29., 2022. 1. 4.>

-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삭제 <2022.1.4>

바. 삭제 <2022.1.4>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2. 1. 4.>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보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3. 29., 2022. 1. 4.>
-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 3. 29., 2022. 1. 4.>
-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들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4.>
- [제목개정 2016. 3. 29.]

**제82조의2(자료 제출 요구)** 위원회는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83조(취업자의 해임요구)** ① 위원회는 제82조제2항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② 위원회는 제82조제2항에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관계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취업자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구하여야 하며, 요구를 받은 관계공공기관의 장은 그 취업자가 취업하고 있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임요구를 받은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제8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22조에 따른 전문위원 및 제25조에 따른 파견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84조(국회 등의 특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당해 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1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제8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행정심판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②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86조 삭제** <2021. 5. 18.>

**제87조(업무상 비밀누설죄)** 제30조에 위반하여 부패방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2019. 4. 16., 2019. 12. 10.>

**제89조(비위면직자들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비위면직자들이 제8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2. 1. 4.>  
[제목개정 2022. 1. 4.]

**제90조(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의3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제7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③ 제62조의5(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2. 10.>  
[전문개정 2019. 4. 16.]

**제91조(과태료)** ① 제62조의2제4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출석, 진술서·자료의 제출, 사실·정보의 조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4. 16.>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 4. 1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3. 29., 2019. 4. 16.>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의2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공공기관의 장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9. 4. 16.>

#### 부칙 <제18715호, 2022. 1.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기관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사기관이 위원회로부터 송부받는 신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조금 지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포상금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2제2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하는 부패행위의 신고로 인하여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포상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하는 부패행위의 신고로 인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감사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비위면직자등이 된 사람은 제8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타법개정]

국민권익위원회(청렴정책총괄과) 044-200-7612

국민권익위원회(심사기획과) 044-200-7694

국민권익위원회(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2

국민권익위원회(민원조사기획과) 044-200-7308

국민권익위원회(법무담당관) 044-200-7057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 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1.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2.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3.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제3조(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5조에 따른 기업의 기업윤리 확립의무가 효과적으로 달성 될 수 있도록 윤리경영 지원 및 협력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4조(공직자 행동강령)** 위원회는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가 법 제8조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개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 및 법 제80조에 따라 고충민원의 신속한 해결, 행정제도의 개선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참여포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권익구제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등과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제6조(권익보호 및 부패방지 정책의 수립)** ① 위원회는 국민의 권리보호·권익구제 및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평가)** 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실태조사·평가를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자료의 분석 등을 의뢰하거나 위원회 및 관계기관의 공직자 등으로 평가 작업반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82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공기관(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82조의2에 따라 제출 요구를 받은 자료 등을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15.]

**제8조(권익구제 및 부패방지 교육)**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9조(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등)**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4호에 따른 행동강령의 시행·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수립·시행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 기관별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이행실태를 조사·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등)** ① 위원회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된 공직자가 징계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의 임면권자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 또는 임면권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5호에 따른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및 상담 업무를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8. 1. 30.>
- ② 위원회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 등이 전화로 처리하는 민원안내 및 상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기술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그 활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경유한 소관 민원사항에 대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사항의 접수 및 안내 등 일부 사무를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참여포털”이라 한다)의 운영을 총괄한다.
- ② 위원회는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참여포털 홈페이지 및 시스템의 운영·관리
  2. 참여포털에 접수된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의 분류 및 재분류
  3. 참여포털에 접수된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의 분석·평가 및 처리결과 사후관리
  4. 참여포털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홍보
  5.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한 기준 마련
  6. 그 밖에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③ 참여포털에 접수되는 민원 및 국민제안 등의 신청·접수·분류·처리 등에 관한 사항과 정책참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관계 행정기관등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④ 관계 행정기관등은 참여포털에 접수되는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에 대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공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정보통신망의 연계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14조(위원의 겸직금지)** 법 제1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교육·연구기관 및 학술단체를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3.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나 승인을 요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15조(위원의 기피·회피)**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 ② 기피사유는 기피를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 ③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기피신청에 대한 위원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신설 2015. 10. 20.>
- ⑤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정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10. 20.>
- ⑥ 위원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0. 20.>

**제16조(위원회 의결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1. 10. 17., 2016. 9. 27., 2020. 12. 22.>

1. 위원회의 주요정책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에 따른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 중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3. 법 제47조에 따른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사항
  4. 법 제51조에 따른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6.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
  7. 부패방지 또는 부패행위 신고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8.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 8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 8의3.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9.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동영상과 음성 등 동시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 30.>

**제17조(소위원회)**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에 관한 고충민원(법 제20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 5. 28., 2014. 11. 19., 2017. 7. 26.>

- 1. 행정·교육·문화·복지·노동·교통 및 도로 등 일반 행정 및 사회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 2. 세무·농림·수산·환경 및 재정 등 경제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 3. 주택·건축 및 도시계획 등 건설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 4. 국방·병무·보훈관련분야의 고충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 등이 제기하는 고충민원을 포함한다)
- 5. 경찰기관(해양경찰기관을 포함한다)의 처분·수사 등 경찰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 ② 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구성위원에게 특정사안에 대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다른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거나, 해당 사안에 한하여 다른 소위원회의 위원을 그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소위원회의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8. 1. 30.>

**제18조(다수인 관련 민원)**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안을 말한다.

- 1. 다수인이 관련된 사안 중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공익 또는 국가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안
- 2. 다수의 행정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련된 사안으로서 이해관계나 처리절차가 복잡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사안
- 3.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신청인의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큰 사안

**제19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조정, 조사·연구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④ 분과위원회의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8. 1. 30.>

**제20조(회의의 공개 등)** ①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조사와 조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신청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 2. 신청인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다수인 관련 민원 등 국가의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서 공개할 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방·안보 또는 수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서 공개할 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정한 심의·의결을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외의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사무처 직원의 선발)**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부패방지업무 및 행정심판업무의 수행 등에 요구되는 전문성 및 청렴성·도덕성을 갖춘 자를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으로서 임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위원회 행동강령 등)** ① 위원회는 위원,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이 고도의 청렴성 및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고충민원 처리와 부패방지업무, 행정심판업무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자문기구)** ① 법 제24조에 따른 자문기구의 자문위원은 복지, 산업, 건축, 도시, 도로, 군사, 경찰, 노동, 환경, 민·형사 등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24조에 따라 자문기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정책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고충민원의 처리와 제도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부패방지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전문상담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민원업무에 관한 국민의 상담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세무사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전문상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수당지급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0. 15.>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
2. 법 제24조에 따른 자문기구의 자문위원
3. 법 제25조에 따라 파견된 직원
4. 법 제29조제1항제2호, 법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이해관계인·참고인·감정인 또는 관계 공직자
- 4의2.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5. 제24조에 따른 전문상담위원
6. 제31조에 따른 자문기구의 자문위원
7. 삭제 <2019. 10. 15.>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6호에 준하는 자(공무원은 제외한다)로서 위원회에 출석한 자

**제26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파견직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21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1. 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공무원경력 5년 이상인 자
  2.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직원은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3. 소관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
  4. 업무처리에 있어서 책임감과 능력이 있고 친절·성실한 자 등 위원회에서 정하는 자
-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기관의 장은 파견후 복귀한 자에 대하여 보직부여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파견직원이 위원회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경력가점을 부여하는 등 평정시 우대할 수 있다.

**제27조(파견직원의 인사 등)** 위원장은 파견직원에 대하여 직급·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업무 및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8조(운영상황)** 법 제26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상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2.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 사항
3.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이 수용하지 아니한 사항 중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고충민원 관련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도개선에 관한 위원회의 의견 및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 조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제도개선에 관한 재심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재심을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결과가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조사·평가의 공개)**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조사·평가결과를 공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9. 27.]

제30조(부패유발요인의 검토) ①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이하 이 조에서 “법령등”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이하 “부패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1. 부패유발의 가능성

-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
- 나. 법령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 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2. 법령등 준수의 용이성

- 가. 국민·기업·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나. 법령등의 위반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
- 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타당성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 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 나. 준비사항·처리절차·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부패영향평가지침을 수립하여 해당 법령등의 소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협조를 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 ⑤ 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기한까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 ⑥ 위원회는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법령등의 부패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은 성실하게 이에 응해야 하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⑨ 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을 포함한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부패영향평가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 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 규제심사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법제업무운영규정」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법령안의 심사과 법령의 정비·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제처에 통보하여 법제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공공기관의 설명요구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목적·일시·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에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4조(이해관계인의 출석요구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일 전일 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35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법 제3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술로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 11. 20., 2016. 11. 29., 2020. 6. 30.>

1. 관계 행정기관등의 명칭
2. 소송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3. 다른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그 권익위원회의 명칭 및 신청 내용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 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
5. 대표자의 인적 사항(대표자가 선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6. 군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인의 소속·계급 및 군번

**제36조(고충민원의 선정대표자)** ①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신청인들을 위하여 그 사안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은 이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선정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신청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권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대리인의 허가)** ① 신청인이 법 제39조제3항제5호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권익위원회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 사항

2.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이유
3. 신청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 ② 권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관계 행정기관등의 정정 등)** 권익위원회는 신청인이 관계 행정기관등을 잘못 지정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관계 행정기관등을 정정하거나 추가하여 지정할 수 있다.

- 제39조(신청서의 보완)** ① 권익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40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 제41조(행정심판 등의 통보)** ①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심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에 따라 접수된 민원사안이 법 제41조에 따라 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과 동일한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권익위원회는 접수한 고충민원이 다른 권익위원회에서 이미 처리된 사안인 경우에는 그 사안을 처리한 권익위원회에 해당 고충민원의 접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의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권익위원회는 해당 고충민원이 접수된 권익위원회에 해당 고충민원의 처리결과 및 처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42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제43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① 권익위원회는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44조(조사의 방법)** ① 권익위원회는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제출일자 및 요구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단순한 사항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전신·모사전송·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이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③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감정의 의뢰는 감정인 또는 감정기관, 감정기간, 감정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5조(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①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성명, 요구의 취지, 출석일시와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를 받은 당사자가 속한 소속 기관의 장은 당해 당사자에 대하여 출장 또는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46조(소속 직원의 실지조사 등)** ① 권익위원회는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실지 조사를 하게 하거나 신청인 등의 진술을 듣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 또는 신청인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방문의 취지·내용·일시·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이나 마약과 관련된 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수사와 관련된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의 소속 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 또는 신청인 등의 진술 청취  
 2. 관계 행정기관등 또는 신청인 등이 소지하는 문서·장부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3.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그 밖의 상황의 확인

**제47조(합의 권고 및 조정 절차)** ① 법 제44조에 따른 합의의 권고로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나 당사자간 자발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권익위원회가 이를 확인한다.  
 ② 권익위원회는 법 제45조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조정회의는 권익위원회 위원장 또는 권익위원회 위원이 주재한다.  
 ④ 권익위원회는 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책임 있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거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조정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① 법 제46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의 내용
  2.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3. 관계 행정기관등의 회신기한 등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법 제47조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제도·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3. 관계 행정기관등의 회신기한 등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9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권익위원회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 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권익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 ② 권익위원회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의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관계 행정기관등·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2.>

**제50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등)** ① 권익위원회는 신청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고충민원이 접수된 사실과 처리담당자의 소속·성명·연락처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전화·전신·모사전송·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1조(처리결과와 통보 등)** ①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권익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재심의할 수 있다.

- ②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과 다른 방법으로 고충민원을 해소한 경우 또는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이행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① 권익위원회는 법 제52조에 따른 권고 등에 대한 이행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대상이 되는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
  4. 그 밖에 확인·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②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 지원) 위원회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1.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립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
2.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와의 구성 등 권익위원회간의 연계·교류를 위한 활동
3.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와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및 교육 지원

## 제4장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

**제54조(신고자의 대표자 선정)** 위원회는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제55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① 위원회는 법 제59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7., 2019. 10. 15.>

1.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신고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근무처·연락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3.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에 해당하하는지의 여부
  4. 신고자와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5.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6. 위원회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고소·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7. 신고자가 위원회의 처리 및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하는지의 여부
- ② 위원회는 제1항제7호에 따라 신분공개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제56조(신고의 보완)** 위원회는 신고자가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신고사항의 이첩 등)** ① 위원회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에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첩하여야 한다.

1.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사원
2.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
3. 그 밖에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 ② 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관 조사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한다.
- 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이첩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59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0. 15.>

1.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2.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 ② 법 제5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가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종결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제58조의2(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의 처리)** 위원회는 법 제59조제7항에 따라 신고사항에 국가기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 신고사항을 접수·처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15.]

**제59조(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사항이 법 제59조제3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사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신고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고, 조사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처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처리결과의 요지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③ 조사기관이 제2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사항의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로서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60조제2항 전단”은 “제59조제2항 전단”으로,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는 “그 처리결과”로, “직접 이첩 받은”은 “송부 받은”으로 본다. <개정 2019. 10. 15.>

[제목개정 2019. 10. 15.]

**제60조(조사기관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② 조사기관은 이첩 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이를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10. 15.]

**제61조(조사결과 등의 통보)** ① 조사기관(조사기관이 이첩받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받은 조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62조에서 같다)은 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2. 감사·수사 또는 조사종료 후 처리방향
  3. 제기조제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해당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다른 조사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그 사실
  6.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 ② 법 제59조제5항에 따른 검찰의 수사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62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재조사의 요구여부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와 관련된 사항중 이해관계인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거나 관련자의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법 제60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는 법 제6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받은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9. 10. 15.>
-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와 법 제60조제5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19. 10. 15.>

**제64조(재정신청의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른 재정신청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검사 또는 수사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정신청을 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으로부터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증거 등을 제출받거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제65조(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0. 15.]

**제66조(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① 위원회는 법 제6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거나 진술서·자료의 제출, 사실·정보의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일시 및 출석장소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다만,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② 위원회 소속직원은 위원회 사무처가 아닌 장소에서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10. 15.]

**제67조(신분보장등조치 결정 등)** ① 위원회는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권고(이하 “신분보장등조치권고”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②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속기관장등(이하 “소속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③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에 따라 법 제6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분보장신청인(이하 “신분보장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한 신분보장등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④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 등 신분보장등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소속기관장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⑤ 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구를 한 때에는 이를 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

[제목개정 2019. 10. 15.]

**제67조의2(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하고, 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등 및 이자의 산정기간은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날부터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9. 10. 15.]

**제68조(조치결과의 통보 등)** ① 소속기관장등은 위원회로부터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를 받거나 제6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권고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② 위원회로부터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를 받은 소속기관장등이 그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위원회에 소명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③ 법 제62조의3제5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전직·전출·전입 또는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받은 인사혁신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구내용에 따른 조치를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9. 10. 15.>

**제68조의2(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① 법 제62조의5제1항에 따라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신청하려는 신분보장신청인은 그 인적사항·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

③ 위원장은 법 제62조의5제1항에 따라 신분보장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 한 경우에는 요구 사실을 신분보장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④ 위원장이 법 제62조의5제1항에 따라 신분보장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한 경우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장등은 해당 조치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로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소명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본조신설 2016. 9. 27.]

[제목개정 2019. 10. 15.]

**제69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등)** 법 제62조의6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9. 10. 15.]

**제70조(신변보호)** ① 법 제6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변보호조치의 요구는 신고자와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요구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30.>

② 법 제6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30., 2020. 12. 31.>

③ 신고자 및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경찰청장,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④ 경찰청장,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가 요구한 신변보호조치의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그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⑤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해제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70조의2(협조 요청)** 위원회는 법 제66조의2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자료·서류 등의 제출 또는 설명
2. 출석 및 의견 진술
3. 소속 직원의 파견, 공동조사 및 자문
4. 신고자(법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및 법 제6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자·증언자·고소인·고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질병 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5. 법률 상담·자문 및 소송의 대리 등 피해 회복 및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구조
6. 신고자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제공 및 취업 알선
7. 그 밖에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9. 10. 15.]

## 제5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포상 및 보상

**제71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0. 15., 2020. 12. 29.>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유예, 기소중지,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삭제 <2019. 10. 15.>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액은 2억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09. 5. 28., 2015. 10. 20., 2019. 10. 15.>
  - ③ 삭제 <2019. 10. 15.>
  - ④ 포상금 지급액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77조제2항 및 제8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7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은 “포상금”으로, “보상금 지급액”은 “포상금 지급액”으로, 제80조 중 “별표 2의 보상대상가액”은 “포상금”으로, “보상금”은 “포상금”으로 본다. <개정 2019. 10. 15.>
  -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15.>
1.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72조(보상금의 지급사유)** ①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0. 15.>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
  6.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 ③ 삭제 <2019. 10. 15.>

**제73조(보상금 신청자의 대표자 선정)** 위원회는 2명 이상이 연명하여 신고한 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제74조(구조금의 산정 기준)** ① 위원회 및 보상위원회는 법 제6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구조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입원·투약·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노무사 등의 수입료
  - 4.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부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이 조에서 “월평균액”이라 한다)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 5. 그 밖에 보상위원회가 신고 및 법 제65조에 따른 협조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했다고 인정하는 금액
    - ②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고, 법 제6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임금 손실액의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③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평균임금은 매년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공신력 있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 ④ 구조금 지급액의 감액 또는 구조금의 지급제한에 관하여는 제77조제2항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7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은 “구조금”으로, 제78조 중 “보상금”은 “구조금”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9. 10. 15.]

**제74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본조신설 2016. 9. 27.]

**제75조(보상위원장)** ① 보상위원회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은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보상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9. 10. 15.>

- ②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지명한 보상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6조(보상위원회의 회의)**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보상위원회는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보상금·구조금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과 관련된 기관의 공직자, 조사기관의 담당자를 보상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 ④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7조(보상금의 결정)**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10. 15.>

② 위원회 및 보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 ③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0. 20.>

**제78조(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한)** 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이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9조(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등)** ① 위원회는 보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 ②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19. 10. 15.>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제80조(보상신청의 경합시 보상금 결정)** ①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표 2의 보상대상가액을 산정할 때에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개정 2019. 10. 15.>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 각각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제77조제2항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81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등)** ① 보상금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의 절차에 따라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그 부과 및 환수 등에 대한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종료된 후에 지급한다.

- ② 제1항에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시작될 때까지 제79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그 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보상금은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 제79조제1항

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액에 이를 때까지 초과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제82조(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 10. 15.>

**제83조 삭제** <2019. 10. 15.>

## 제6장 국민감사청구

**제84조(감사청구인)** 법 제7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란 300명을 말한다.

**제85조(감사청구 제외사항)** 법 제7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3.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 또는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제86조(감사청구의 방법)** 법 제72조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청구인의 성명·전화번호·생년월일·주소 및 직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이하 “감사청구서”라 한다)로 하되, 그 중 5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감사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6.>

**제87조(감사청구서의 반려)** 감사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은 동일한 내용의 감사청구서가 동일 기관에 2건 이상 또는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나중에 접수된 감사청구서를 반려할 수 있다.

## 제7장 보칙

**제88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의 방법)** 법 제77조에 따른 제도개선 제안에 관한 의견제출과 관련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개선 대상 제도나 법률 또는 조례의 현황과 문제점
2.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의 내용
3. 관련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
4. 제2호 또는 제3호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등의 의견
5. 그 밖에 제도의 개선이나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폐지를 위하여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0. 12. 22.]

**제88조의2(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대상자가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 등인 경우에는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수립 등 청렴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렴의식 함양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부패방지교육 실시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육자료 또는 교육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9. 27.]

**제88조의3(포상)** ① 위원회는 법 제81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사회 각 분야의 부정부패 방지, 청렴문화 확산 및 국가청렴도 향상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2. 고충민원 처리업무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3. 국민의 권익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운영, 민원분석 업무 추진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4. 행정심판 운영 및 제도 발전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5. 그 밖에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향상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위원회는 법 제81조의3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15.]

**제89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및 확인)** ①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업제한 사유발생일(이하 “취업제한 사유발생일”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업체 등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단체의 장(퇴직 당시의 소속기관·단체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거쳐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체 등에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7.>

1. 영리사기업체 및 법 제82조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법인 등(이하 “영리사기업체등”이라 한다)
2.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법인·단체
  -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소속기관·단체의 장은 법 제82조에 따른 사항을 조사·확인하고 그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 ③ 관할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송 받은 확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영리사기업체등 또는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법인·단체에의 취업이 법 제82조에 따라 제한되는지의 여부를 소속기관·단체의 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7.>

**제89조의2(부패행위 관련 기관 등)** ① 법 제8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이란 비위면직자등의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비위면직자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였던 사람이 소속하였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2. 비위면직자등의 부패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얻을 수 있었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 ② 법 제82조제2항제3호바목에서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 9. 27.]

**제90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확인)** ① 공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비위면직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사유발생일부터 5년 동안 법 제8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의 취업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7.>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89조제2항·제3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위면직자등이 취업한 영리사기업체등이 비위면직자등이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비위면직자등이 소속하였던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9. 27.>
- ④ 법 제82조의2 전단에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6. 9. 27., 2018. 9. 18., 2020. 6. 9.>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중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에 관한 자료
2. 비위면직자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소속기관 및 징계종류·징계사유·퇴직일
3.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급여제한자의 성명·생년월일·소속기관
4. 「군인연금법」 제38조제1항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42조에 따른 급여제한자의 성명·생년월일·소속기관
5.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사업장 및 자격취득·변동시기에 관한 자료
6.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및 같은 항 제19호라목에 따른 소득 및 과세에 관한 자료

[제목개정 2016. 9. 27.]

**제9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1. 30.>

1. 법 제1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제13호에 따른 부패방지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3. 법 제12조제14호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9조에 따른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충민원의 접수·처리·조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무
8. 법 제62조에 따른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무(법 제65조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9. 법 제64조 및 제64조의2에 따른 신고자 비밀보장 및 신분보호조치에 관한 사무(법 제65조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법 제68조에 따른 포상 및 보상에 관한 사무
11. 법 제83조에 따른 취업자의 해임요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1. 10. 17.]

**제9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9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 10. 15.>

[전문개정 2009. 5. 28.]

**제92조(운영규정)**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제31349호, 2020. 12. 31.>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㉖부터 ㉙까지 생략





도민  
권익보호  
신뢰받는  
강원도

발행일 2022. 2. 10.  
발행처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주소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24266) 강원도청 별관1층  
전화 033-249-2301~3  
홈페이지 [www.gwombudsman.co.kr](http://www.gwombudsman.co.kr)  
디자인·제작 (주)근하인사이트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지하며,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